

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사항

(제 1편 선급등록 및 검사)



(사)한국선급

- 주 요 개 정 내 용 -

(1) 2019.01.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IACS UR Z3(Rev. 7, Jan 2018)

- 수중검사와 관련된 내용 중 잠수부관련 용어 최신화

● IACS UR Z7.1(Rev. 13, Aug 2017) 개정사항 반영

- 두께계측에 대한 허용기준과 관련된 요건 신설
- 일반건화물선과 선체검사와 관련하여, 혼합된 화물창배치를 가지는 선박의 경우, 단일선측 화물창 구역에만 일반건화물선의 선체검사를 적용한다는 요건 추가

● Z7/Z7.1/7.2(Rev. 26/14/7 Jan 2018) 개정사항 반영

- 정밀검사의 대체수단인 원격검사기술(RIT)에 대한 요건 추가
- 정기검사시 선박구조물에 통합된 해수유입 덕트/통풍용 덕트에 대한 내부검사 요건 신설

● IACS UR Z10.2/Z10.5(Rev. 34/17 Sep 2017) 개정사항 반영

- 100,000DWT 이상의 산적화물서의 화물창의 Close-up survey시 작업높이가 17m 이하의 경우 유압식 차량(Cherry picker등)의 사용 인정 요건 신설
- 두께계측에 대한 허용기준과 관련된 요건 추가

● Z10.1/Z10.2/Z10.3/Z10.4/Z10.5(Rev. 23/35/18/15/18 Jan 2018) 개정사항 반영

- 연차검사의 일반사항 중 아래의 항목 추가함

- # 정비기록 및 이전 검사보고서에서 식별된 평형수탱크나 지역의 부식방지시스템의 상태와 범위 고려 요건
- # 청구덮개 및 창구코밍이 대대적으로 수리된 경우, 고박장치의 강도는 규칙 7편 3장 9절 905. 폐쇄설비에 따른 최신화 요건

- 내부고객(법령업무팀)의 개정요청서 반영
 - 선급규칙보다 강화된 선박안전법 중 특정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 선박(ESP 선박)의 검사요건 신설
 - 한국 어선법 적용대상 선박의 어선법에 따른 두께계측과 선급규칙의 두께계측 요건이 상이하어 어선법 규칙을 따르도록 요건 개정
- 그 외 규칙적용시 발견된 불합리한 요건에 등에 대한 개정

(2) 2019.07.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특별히 고려” 의미 명확화 및 “방식조치”와 “부식방지시스템”의 용어 통일
 - 두께계측 및 정밀검사와 관련된 “특별히 고려”의 해석 명확화
 - Corrosion prevention system에 대한 국문용어가 “방식조치”와 “부식방지시스템”으로 혼용되어 “부식방지시스템”으로 용어 통일 (여수광양지부 요청 반영)
- 그 외 규칙적용시 발견된 불합리한 요건에 등에 대한 개정
 - 갑판 수밀봉(Deck seal)의 점검과 관련하여, 역류방지장치로는 갑판 수밀봉 또는 이중차단 배출밸브가 설치 될 수 있으므로 이중차단 및 배출밸브에 대한 시험요건 및 2차 역류방지구단인 역류방지밸브의 검사요건 추가

(1) 2019.01.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현행	개정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선급등록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선급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p> <p>101. ~ 109. <생략></p> <p>110. 두께계측 절차 (2018) 【지침 참조】</p> <p>1. <생략></p> <p>2. 두께계측은 통상적으로 초음파 계측기를 이용하여 시행하며, 검사원이 요구하는 경우 장비의 정확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두께계측은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이 아닌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및 모든 어선에 대한 두께계측을 제외하고 지침 부록 1-11에 따라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은 두께계측업자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p> <p>3. 두께계측 및 정밀검사 모든 종류의 검사, 즉 정기, 중간, 연차 또는 이와 같은 검사사항을 가지는 기타검사에서 정밀검사가 요구되는 지역의 구조에 대한 두께계측은, 표 1.2.4의 1, 표 1.2.9, 표 1.2.11, 표 1.3.2, 표 1.3.5, 표 1.3.8, 표 1.3.11 및 표 1.3.14에서 요구되는 경우, 정밀검사와 동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검사원은 정밀검사의 대체수단으로 원격검사기술(RIT)을 고려할 수 있다. 원격검사기술을 이용하여 실시된 검사결과는 규칙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2017) <u>〈새롭게 추가〉</u></p> <p>우리 선급은 강 이외의 재료로 건조된 구조에 대하여 두께계측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침 부록 1-5의 1항 (1)호 (나) 참조)</p> <p><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선급등록 <현행과 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선급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p> <p>101. ~ 109. <현행과 동일></p> <p>110. 두께계측 절차 (2018) 【지침 참조】</p> <p>1. <현행과 동일></p> <p>2. 두께계측은 통상적으로 초음파 계측기를 이용하여 시행하며, 검사원이 요구하는 경우 장비의 정확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두께계측은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이 아닌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및 모든 어선에 대한 두께계측을 제외하고 전문공급자 승인 지침 지침 부록 1-11에 따라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은 두께계측업자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2019)</p> <p>3. 두께계측 및 정밀검사 모든 종류의 검사, 즉 정기, 중간, 연차 또는 이와 같은 검사사항을 가지는 기타검사에서 정밀검사가 요구되는 지역의 구조에 대한 두께계측은, 표 1.2.4의 1, 표 1.2.9, 표 1.2.11, 표 1.3.2, 표 1.3.5, 표 1.3.8, 표 1.3.11 및 표 1.3.14에서 요구되는 경우, 정밀검사와 동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2019) 검사원은 정밀검사의 대체수단으로 원격검사기술(RIT)을 고려할 수 있다. 원격검사기술을 이용하여 실시된 검사결과는 규칙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2017) <u>정밀검사의 대체수단으로 원격검사기술을 이용 시 요구되는 두께계측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표 1.2.9, 표 1.2.11, 표 1.3.2, 표 1.3.5, 표 1.3.8, 표 1.3.11 및 표 1.3.14에서 요구하는 두께계측을 위한 임시접근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2019)</u></p> <p>우리 선급은 강 이외의 재료로 건조된 구조에 대하여 두께계측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침 부록 1-5의 1항 (1)호 (나) 참조)</p> <p><이하 현행과 동일></p>

연 행	개 정 사 항
111. <새롭게 추가>	<p><u>111. 두께계측에 대한 허용기준 (2019)</u></p> <p><u>두께계측의 허용기준은 지침 부록 1-5의 표 1 및/또는 별도의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예를 들면,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통일규칙(UR) S21A(Evaluation of Scantlings of Hatch Covers and Hatch Coamings and Closing Arrangements of Cargo Holds of Ships, S21A applies for ships contracted for construction on or after 1 July 2012, Rev.1 of UR S21A applies for ships contracted for construction on or after 1 July 2016.)에 따른다.</u></p>

현행	개정사항
<p>111. 원격검사기술 (Remote Inspection Techniques, RIT) (2017) 원격검사기술(RIT)은 일반적으로 정밀검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원격검사기술에 의한 <u>검사</u>는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권고사항 Rec42(Guidelines for Use of Remote Inspection Techniques for surveys)의 요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은 검사에 앞서 제출되어야 하는 원격검사기술의 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계획서는 선급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새롭게 추가됨></p> <p>112. ~ 114. <생략> <이하 생략></p>	<p>112. 원격검사기술 (Remote Inspection Techniques, RIT) (2019) 1. 원격검사기술(RIT)은 일반적으로 정밀검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원격검사기술에 의한 <u>검사</u>는 <u>아래 및</u>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권고사항 Rec42(Guidelines for Use of Remote Inspection Techniques for surveys)의 요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은 검사에 앞서 제출되어야 하는 원격검사기술의 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계획서는 선급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2. <u>원격검사기술과 관련된 검사를 관찰하고 보고하는 장비와 절차는 원격검사기술의 검사에 앞서 관련 당사자들과 논의하고 합의해야 하며, 모든 장비가 설정, 검교정 및 점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이 허용되어야 한다.</u> 3. <u>원격검사기술을 정밀검사의 대체수단으로 이용 시, 우리 선급이 자체적으로 원격검사기술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전문공급자 승인 지침에 따라 우리선급의 승인을 받은 원격검사기술에 종사하는 전문공급자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담당검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u> 4. <u>원격검사기술에 의하여 검사할 선체구조는 실질적인 검사가 되도록 충분히 깨끗해야 하며, 시야(Visibility) 또한 실질적인 검사가 되기에 충분해야 한다. 구조에 대한 방향설정 방법은 검사원이 양호하다고 인정해야 한다.</u> 5. <u>그림 표현을 포함한 자료제시 방법 또한 검사원이 양호하다고 인정해야 하며 검사원과 원격검사기술 작업자 사이에 양호한 양방향 통신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u> 6. <u>만약 원격검사기술에 의한 검사 시 주의를 요하는 손상이나 결함이 식별되는 경우, 담당검사원은 원격검사기술이 아닌 전통적인 검사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u></p> <p>113. ~ 115. (2019) <현행과 동일> <이하 현행과 동일></p>

현 행

제 4 절 정기검사(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

401. ~ 402. <생략>

403. 검사사항

표 1.2.3 정기검사 시 탱크 및 구역의 내부검사 최소범위 (2017)

정기검사 구분		제1차 정기검사	제2차 정기검사	제3차 정기검사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
탱크 또는 구역					
화물창(이중갑판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화물탱크		○	○	○	○
이중저탱크, 디프탱크, 평형수탱크, 피크탱크		○	○	○	○
펌프실, 파이프터널, 덕트킬, 기관구역, 드라이스페이스, 코퍼뎀, 보이드스페이스		○	○	○	○
연료유탱크 [△]	기관실	-	-	1개	1개
	화물지역	-	1개	2개	절반, 최소한 2개
	기관실 및 화물지역 외(설치된 경우)	-	1개	1개	2개
윤활유탱크 [△]		-	-	-	1개
청수탱크 [△]		-	1개	○	○

(비고)

적용은 탱크의 용도에 의한 분류를 우선으로 한다.

○ : 모든 탱크 및 구역에 대하여 내부검사를 시행한다.

△ : 다음에 따른다.

- 1) 이 요건은 (구조적)일체형탱크에 적용한다.
- 2) 검사할 탱크를 선택하는 경우 순환적으로 매 정기검사 시 다른 탱크를 검사한다.
- 3) (모든 용도의) 피크탱크는 매 정기검사 시 내부검사를 하여야 한다.
- 4) 제3차 및 이후 정기검사 시 설치된 경우 화물지역 내 한 개의 연료유디프탱크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 정 사 항

제 4 절 정기검사(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

401. ~ 402. <현행과 동일>

403. 검사사항

표 1.2.3 정기검사 시 탱크 및 구역의 내부검사 최소범위

정기검사 구분 탱크 또는 구역	제1차 정기검사	제2차 정기검사	제3차 정기검사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
<생략>				
펌프실, 파이프터널, 덕트킬, 기관구역, 드라이스페이스, 코퍼댐, 보이드스페이스	○	○	○	○
선박의 구조물에 통합된 해수유입 덕트, 통풍용 덕트 (설치된 경우)² (2019)	-	-	<u>○</u>	<u>○</u>
<이하 생략>				

(비고)

1. 적용은 탱크의 용도에 의한 분류를 우선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용어의 정의 : [선박의 구조물에 통합된 해수유입 덕트 및 통풍용 덕트 \(IACS Rec. 111 참조\), \(2019\)](#)

1) [해수유입 덕트\(Downflooding ducts\)](#)

: [SOLAS의 손상복원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치되며, 설치의 목적은 침수시 물을 낮은 구획으로 옮겨서 손상 상태에서 복원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해수유입 덕트는 일반적으로 선박의 측면에 설치되며 덕트의 경계\(boundary\)중 한 면은 외판\(Side shell plating\)으로 구성되어 선박의 구조물에 통합된다.](#)

2) [통풍용 덕트\(Structural ventilation ducts\)](#)

: [공기압에 의한 하중 이외의 하중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강되어 선박 구조나 자체 지지에 통합 될 수 있다. 통풍용 덕트는 수밀격벽을 통과하는 경우 또는 선박의 계산된 손상 시나리오에 따라 선박의 손상시 채울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 될 수 있다.](#)

(예, 선종부호가 RoRo Ship, Passenger Ship - RoRo나 Passenger Ship - Car Ferry 등의 차량을 운송하기 위한 화물구역에 설치된 통풍용 덕트로 그 경계(boundary) 중 한 면은 외판(side shell plating)으로 구성되어 선박의 구조물에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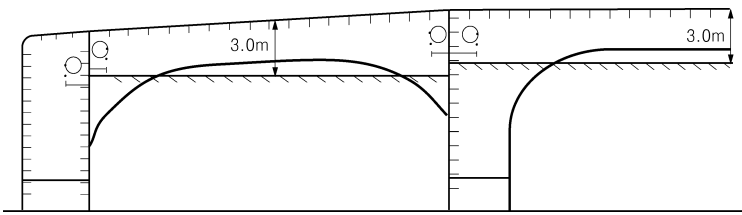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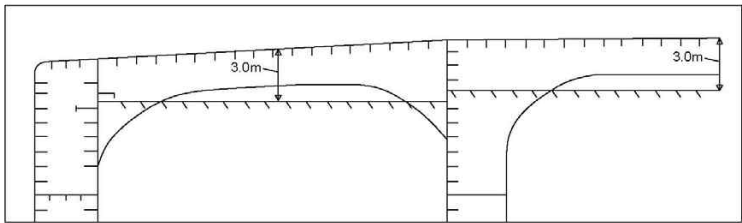
현행	개정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절 입거검사</p> <p>601.~603. <생략></p> <p>604. 수중검사</p> <p>1.~2. <생략></p> <p>3. 입거검사를 수중검사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p> <p>(1)~(2) <생략></p> <p>(3) 검사조건</p> <p>(가)~(나) <생략></p> <p>(다) 해상상태(조류, 해류, 파고 등)가 평온하고 해수중의 시계 및 수선하 선체의 청결상태는 검사원 및 잠수부가 외관, 부가물 및 용접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깨끗하여 실질적인 검사가 되도록 할 것.</p> <p>(라) 선저와 해저의 간격은 충분한 상태일 것.</p> <p>(마) 수중검사는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은 <u>수중검사업자</u>에 의하여 시행할 것.</p> <p>(6) 잠수부 보고서</p> <p>잠수부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가) 수중검사업자 명칭</p> <p>(나) 잠수부의 성명 및 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 번호</p> <p>(다) 검사일자 및 장소</p> <p>(라) 사용한 수중검사장비의 명칭</p> <p><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절 입거검사</p> <p>601.~603. <현행과 동일></p> <p>604. 수중검사</p> <p>1.~2. <현행과 동일></p> <p>3. 입거검사를 수중검사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p> <p>(1)~(2) <현행과 동일></p> <p>(3) 검사조건</p> <p>(가)~(나) <현행과 동일></p> <p>(다) 해상상태(조류, 해류, 파고 등)가 평온하고 해수중의 시계 및 수선하 선체의 청결상태는 검사원 및 <u>잠수부 “선박 및 이동식해양구조물에 대한 수중검사를 잠수부 또는 무인잠수정(ROV)에 의하여 시행하는 회사”</u>가 외관, 부가물 및 용접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깨끗하여 실질적인 검사가 되도록 할 것. <u>(2019)</u></p> <p>(라) 선저와 해저의 간격은 충분한 상태일 것.</p> <p>(마) 수중검사는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은 <u>수중검사업자 “선박 및 이동식해양구조물에 대한 수중검사를 잠수부 또는 무인잠수정(ROV)에 의하여 시행하는 회사”</u>에 의하여 시행할 것. <u>(2019)</u></p> <p>(6) 잠수부 보고서</p> <p>잠수부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가) <u>수중검사업자 “선박 및 이동식해양구조물에 대한 수중검사를 잠수부 또는 무인잠수정(ROV)에 의하여 시행하는 회사”</u> 명칭 <u>(2019)</u></p> <p>(나) 잠수부의 성명 및 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 번호</p> <p>(다) 검사일자 및 장소</p> <p>(라) 사용한 수중검사장비의 명칭</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현행과 동일></p>

현행	개정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 14 절 일반건화물선의 선체검사</p> <p>1401. 일반</p> <p>1. 적용</p> <p>(1) 이 규정은 2장의 다른 규정에 추가하여 자항으로 고체화물을 운송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모든 일반건화물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선박은 적용을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 산적화물선 및 이중선체 산적화물선 - 컨테이너전용운반선 - 로로운반선 - 냉동운반선 - 우드칩전용운반선 - 시멘트전용운반선 - 가축운반선 - 갑판화물선(갑판 상부에만 화물을 적재하도록 설계된 선박) - 상갑판까지 화물창의 전 높이 및 화물지역의 전 길이에 걸쳐 연장된 이중선체를 가지는 이중선체구조의 일반건화물선 <p>그러나 이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되는 상기 나열된 <u>선박에 포함되는</u> 경우라 할지라도 단일화물창 화물선에 대하여는 1402.의 7항 및 1404.의 7항의 요건을 적용한다.</p> <p><u><새롭게 추가></u></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4 절 일반건화물선의 선체검사</p> <p>1401. 일반</p> <p>1. 적용</p> <p>(1) 이 규정은 2장의 다른 규정에 추가하여 자항으로 고체화물을 운송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모든 일반건화물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선박은 적용을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 산적화물선 및 이중선체 산적화물선 - 컨테이너전용운반선 - 로로운반선 - 냉동운반선 - 우드칩전용운반선 - 시멘트전용운반선 - 가축운반선 - 갑판화물선(갑판 상부에만 화물을 적재하도록 설계된 선박) - 상갑판까지 화물창의 전 높이 및 화물지역의 전 길이에 걸쳐 연장된 이중선체를 가지는 이중선체구조의 일반건화물선 <p>그러나 이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되는 상기 나열된 <u>선박의 예 포함되는</u> 경우라 할지라도 단일화물창 화물선에 대하여는 1402.의 7항 및 1404.의 7항의 요건을 적용한다. <u>(2019)</u></p> <p><u>일반건화물선의 선체검사와 관련하여, 단일선체 화물창 및 이중선체 화물창이 혼합된(hybrid) 화물창배치를 가지는 일반건화물선의 경우, 단일선체 화물창 구역에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 (2019)</u></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현행과 동일></p>

현행	개정사항
<p>제 18 절 한국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 적용대상선박에 대한 특별규정</p> <p>1801. 한국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선박에 대한 특별규정 【지침 참조】</p> <p>1. ~ 5. <생략></p> <p>6. 303.(중간검사 시의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의 적용에 있어 선박의 예비품 등을 검사한다.</p> <p><u><새롭게 추가></u></p> <p>7. 9편 2장(하역설비)의 적용에 있어 1톤 이상의 하역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하역램프는 제외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p>	<p>제 18 절 한국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 적용대상선박에 대한 특별규정</p> <p>1801. 한국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선박에 대한 특별규정 【지침 참조】</p> <p>1. ~ 5. <현행과 동일></p> <p>6. 303.(중간검사 시의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의 적용에 있어 선박의 예비품 등을 검사한다.</p> <p>7. 3장 1절 101. 2.(<u>특정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에 대한 절차요건</u>)의 적용에 있어, 재화중량이 100,000톤 이상인 유조선 및 이중선체 산적화물선으로 선령 10년과 15년 사이에 시행하는 중간검사시 과도한 부식 또는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경우 최소한 2명의 정검사원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019)</p> <p>8. 9편 2장(하역설비)의 적용에 있어 1톤 이상의 하역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하역램프는 제외한다. (2019)</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현행과 동일></p>

현행	개정사항
<p>1802. 한국 어선법 적용대상선박에 대한 특별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국적으로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선(가공 또는 운반선 제외)의 경우 연차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기에 해외수역에서의 조업으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기준일로부터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선급의 승인을 거쳐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2. 진수일로부터 선령 5년 미만이고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는 연차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u>진수일로부터 선령 20년 이상이고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는 정기검사 시의 두께계측 최소범위에 기관실의 전후단격벽 및 해수흡입구의 판을 추가하여야 한다.</u> 4. 진수일로부터 선령 30년 이상이고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 중간검사 시의 두께계측 요건은 전회 정기검사와 동일한 범위로 하여야 한다. 5. 203., 303. 및 502.(연차검사, 중간검사 및 정기검사 시의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의 적용에 있어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을 한다. 6. 303.(중간검사 시의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의 적용에 있어 303.의 2항 및 3항의 기관에 대하여는 경보장치 및 안전장치의 작동시험을 한다. 다만, 본선에 거치된 지 5년 미만의 기관에 대하여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p><새롭게 추가></p>	<p>1802. 한국 어선법 적용대상선박에 대한 특별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국적으로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선(가공 또는 운반선 제외)의 경우 연차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기에 해외수역에서의 조업으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기준일로부터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선급의 승인을 거쳐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2. 진수일로부터 선령 5년 미만이고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는 연차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u>진수일로부터 선령 20년 이상이고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는 정기검사 시의 두께계측 최소범위에 기관실의 전후단격벽 및 해수흡입구의 판을 추가하여야 한다. 한국어선법 적용대상 선박의 두께계측 범위, 두께계측 방법, 쇄모한도, 두께계측 결과의 조치 및 기록 등은 어선법 시행규칙 제 55조 제 2항, 3항 및 별표 14에 따라서 실시한다. (2019)</u> 4. 진수일로부터 선령 30년 이상이고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 중간검사 시의 두께계측 요건은 전회 정기검사와 동일한 범위로 하여야 한다. 5. 203., 303. 및 502.(연차검사, 중간검사 및 정기검사 시의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의 적용에 있어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을 한다. 6. 303.(중간검사 시의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의 적용에 있어 303.의 2항 및 3항의 기관에 대하여는 경보장치 및 안전장치의 작동시험을 한다. 다만, 본선에 거치된 지 5년 미만의 기관에 대하여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7. <u>9편 2장(하역설비)의 적용에 있어, 총톤수 300톤 이상 선박에 설치된 1톤 이상의 하역설비를 포함한다. (2019)</u> ↓

현행	개정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p> <p>101. 적용 <생략></p> <p>102. 검사준비</p> <p>1. 검사계획서(survey programme)</p> <p>(1) <생략></p> <p>(2) 검사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검사하여야 할 화물창/화물탱크, 탱크, 지역 및 구조부재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생략></p> <p>(나) 유조선, 케미컬탱커 및 이중선체 유조선</p> <p>(a) ~ (j) <생략></p> <p>(k) 일반적인 구조적 결함, 탱크경계 및 관의 누설과 해당되는 경우 도장 및 방식조치의 상태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선박소유자 검사기록 <추가></p> <p><생략></p> <p>3. 선체구조부재로의 접근(access to structures)</p> <p>(1) ~ (4) <생략></p> <p><u>상기 요건에도 불구하고, 사다리의 상단부를 고정하는 기계장치를 갖춘 휴대식 사다리는 202.의 4항에서 요구하는 연차검사 시의 “선측능골 중 충분한 범위(최소한 능골 25% 이상)에 대하여, 인접한 외판 및 하부 브래킷을 포함하여 능골 하부로부터 1/3까지의 범위”에 대한 정밀검사 시에 사용할 수 있다.</u></p> <p><새롭게 추가></p> <p><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p> <p>101. 적용 <현행과 동일></p> <p>102. 검사준비</p> <p>1. 검사계획서(survey programme)</p> <p>(1) <현행과 동일></p> <p>(2) 검사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검사하여야 할 화물창/화물탱크, 탱크, 지역 및 구조부재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과 동일></p> <p>(나) 유조선, 케미컬탱커 및 이중선체 유조선</p> <p>(a) ~ (j) <현행과 동일></p> <p>(k) 일반적인 구조적 결함, 탱크경계 및 관의 누설과 해당되는 경우 도장 및 방식조치의 상태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선박소유자 검사기록. <u>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은 부록 1-4 “선박소유자 검사기록부”를 참조한다. (2019)</u></p> <p><현행과 동일></p> <p>3. 선체구조부재로의 접근(access to structures)</p> <p>(1) 현상검사 시 검사원이 안전하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선체구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p> <p>(2) ~ (4) <현행과 동일></p> <p>상기 요건에도 불구하고:</p> <p>a) 사다리의 상단부를 고정하는 기계장치를 갖춘 휴대식 사다리는 202.의 4항에서 요구하는 연차검사 시의 “선측능골 중 충분한 범위(최소한 능골 25% 이상)에 대하여, 인접한 외판 및 하부 브래킷을 포함하여 능골 하부로부터 1/3까지의 범위”에 대한 정밀검사 시에 사용할 수 있다. (2019)</p> <p>b) <u>최대작업높이가 17m 이하의 경우, 화물창 선측능골 또는 그 외 구조부재의 상부에 대한 정밀검사시 담당검사원은 체리피커와 같은 유압승강장치나 승강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2019)</u></p> <p><이하 현행과 동일></p>

현행	개정사항
<p>6. 해상 부양상태에서의 검사</p> <p>(1) ~ (5) <생략></p> <p>(6) 웨브의 깊이가 1.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한 조건으로 보트 또는 뗏목을 사용할 수 있다.</p> <p>(가) 갑판하부 도장상태가 양호하고 쇠모현상이 없는 경우</p> <p>(나) 각 베이 내에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상설접근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즉,</p> <p>(a) 각 베이 내에서 수직사다리 및 갑판 아래 약 2 m 지점에 설치된 소형플랫폼을 통한 갑판으로부터의 직접접근, 또는</p> <p>(b) 탱크의 양단에 갑판으로 연결되는 사다리를 가지는 종방향 상설 플랫폼으로부터 갑판으로의 접근. 이 플랫폼은 탱크의 전 길이에 걸쳐 갑판하부구조를 뗏목을 사용하여 검사하기에 필요한 최대수위 또는 그 상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최대수위에 상응하는 얼리지는 갑판트랜스버스의 중간 및 탱크길이의 중간에서 계측하여 갑판으로부터 3 m 미만으로 가정되어야 한다.(유조선, 케미컬탱커 및 이중선체 유조선인 경우 그림 1.3.1 참조)</p> <p>상기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판하부의 검사를 위한 발판 또는 이와 동등한 수단을 설치하여 탱크검사를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1.3.1</p> <p>(7) (5)호 및 (6)호의 규정은 검사 중에 보트 또는 뗏목을 탱크 내에서 이동하며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p> <p><이하 생략></p>	<p>6. 해상 부양상태에서의 검사</p> <p>(1) ~ (5) <현행과 동일></p> <p>(6) 웨브의 깊이가 1.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한 조건으로 보트 또는 뗏목을 사용할 수 있다.</p> <p>(가) 갑판하부 도장상태가 양호하고 쇠모현상이 없는 경우</p> <p>(나) 각 베이 내에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상설접근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즉,</p> <p>(a) 각 베이 내에서 수직사다리 및 갑판 아래 약 2 m 지점에 설치된 소형플랫폼을 통한 갑판으로부터의 직접접근, 또는</p> <p>(b) 탱크의 양단에 갑판으로 연결되는 사다리를 가지는 종방향 상설 플랫폼으로부터 갑판으로의 접근. 이 플랫폼은 탱크의 전 길이에 걸쳐 갑판하부구조를 뗏목을 사용하여 검사하기에 필요한 최대수위 또는 그 상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최대수위에 상응하는 얼리지는 갑판트랜스버스의 중간 및 탱크길이의 중간에서 계측하여 갑판으로부터 3 m 미만으로 가정되어야 한다.(유조선, 케미컬탱커 및 이중선체 유조선인 경우 그림 1.3.1 참조)</p> <p>상기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판하부의 검사를 위한 발판 또는 이와 동등한 수단을 설치하여 탱크검사를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1.3.1 탱크안에서 최대수위 (2019)</p> <p>(7) (5)호 및 (6)호의 규정은 검사 중에 보트 또는 뗏목을 탱크 내에서 이동하며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p> <p><이하 현행과 동일></p>

현행	개정사항
<p>105. 쇄모에 대한 허용기준</p> <p>1.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1편, 12편 또는 13편)에 따라 건조되지 아니한 선박인 경우 쇄모에 대한 허용기준은 지침 부록 1-5의 표 1 및/또는 별도의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요건(예를 들면,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통일규칙(UR) S31(Renewal Criteria for Side Shell Frames and Brackets in Single Side Skin Bulk Carriers and Single Side Skin OBO Carriers not Built in accordance with UR S12 Rev.1 or subsequent revisions))에 따른다.</p> <p>2.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1편, 12편 또는 13편)에 따라 건조된 선박인 경우 쇄모에 대한 허용기준은 산적화물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1편) 13장, 이중선체 유조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2편) 12장,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3편) 1부 13장 및 다음에 따른다.</p> <p>(1) 피팅부식에 대한 허용기준 (가) 선측구조: 산적화물선 및 이중선체 산적화물선인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105. 쇄모에 대한 허용기준</p> <p>1.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1편, 12편 또는 13편)에 따라 건조되지 아니한 선박인 경우 쇄모에 대한 허용기준은 지침 부록 1-5의 표 1 및/또는 별도의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요건(예를 들면,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통일규칙(UR) S18 (Evaluation of Scantlings of Corrugated Transverse Watertight Bulkheads in Bulk Carriers Considering Hold Flooding), S19(Evaluation of Scantlings of the Transverse Watertight Corrugated Bulkhead between Cargo Holds Nos. 1 and 2, with Cargo Hold No. 1 Flooded, for Existing Bulk Carriers), S21(Evaluation of Scantlings of Hatch Covers and Hatch Coamings of Cargo Holds of Bulk Carriers, Ore carriers and Combination Carriers) 및 S31(Renewal Criteria for Side Shell Frames and Brackets in Single Side Skin Bulk Carriers and Single Side Skin OBO Carriers not Built in accordance with UR S12 Rev.1 or subsequent revisions))에 따른다. (2019)</p> <p>2.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1편, 12편 또는 13편)에 따라 건조된 선박인 경우 쇄모에 대한 허용기준은 산적화물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1편) 13장, 이중선체 유조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2편) 12장,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3편) 1부 13장 및 다음에 따른다.</p> <p>(1) 피팅부식에 대한 허용기준 (가) 선측구조: 산적화물선 및 이중선체 산적화물선인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동일〉</p>

현행	개정사항
<p>(나) 기타구조 피팅강도가 20 % 미만인 판의 경우(그림 1.2.1 참조) 개별적으로 측정된 모든 계측두께 t_m은 다음 기준 중에서 작은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p> $t_m \geq 0.7(t_{as-built} - t_{vol add}) \quad \text{mm}$ $t_m \geq t_{ren} - 1 \quad \text{mm}$ <p>여기서, $t_{as-built}$ 부재의 건조두께 (mm) $t_{vol add}$ <생략> t_{ren} <u>신환두께: 신환되어야 하는 구조부재의 최소허용두께 (mm)</u> t_c 산적화물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1편) 3장 3절, 이중선체 유조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2편) 6장 또는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3편) 1부 3장 3절에 정의된 총 부식추가 (mm) t_m <생략></p> <p>해당 판 내에서 모든 단면에 걸친 평균두께는 산적화물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1편) 13장, 이중선체 유조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2편) 12장 또는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3편) 1부 13장에 주어진 일반부식에 대한 해당 신환기준 이상이어야 한다.</p>	<p>(나) 기타구조 피팅강도가 20 % 미만인 판의 경우(그림 1.2.1 참조) 개별적으로 측정된 모든 계측두께 t_m은 다음 기준 중에서 작은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p> $t_m \geq 0.7(t_{as-built} - t_{vol add}) \quad \text{mm}$ $t_m \geq t_{ren} - 1 \quad \text{mm}$ <p>여기서, $t_{as-built}$ 부재의 건조두께 (mm) $t_{vol add}$ <현행과 동일> t_{ren} <u>산적화물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1편) 13장 2절, 이중선체 유조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2편) 12장 12절 또는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3편) 1부 13장 2절에 정의된 신환두께(신환되어야 하는 구조부재의 최소허용두께 (mm)) (2019)</u> t_c <현행과 동일> t_m <현행과 동일></p> <p>해당 판 내에서 모든 단면에 걸친 평균두께는 산적화물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1편) 13장, 이중선체 유조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2편) 12장 또는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3편) 1부 13장에 주어진 일반부식에 대한 해당 신환기준 이상이어야 한다.</p>

현행	개정사항
<p>(2) 단부부식에 대한 허용기준</p> <p>(가) 면재 또는 평강 보강재의 경우에는 웨브의 단부부식의 전체 부식 높이가 해당 보강재 면재의 폭 또는 웨브의 높이의 25% 미만인 경우(그림 1.2.2 참조) 계측두께 t_m은 다음 기준 중에서 작은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p> $t_m \geq 0.7(t_{as-built} - t_{vol add}) \quad \text{mm}$ $t_m \geq t_{ren} - 1 \quad \text{mm}$ <p>〈새롭게 추가〉</p> <p>(나) ~ (다) 〈생략〉</p> <p>(3) 홈부식에 대한 허용기준</p> <p>(가) 홈의 폭이 웨브높이의 최대 15% 이지만 30 mm 이하인 경우(그림 1.2.3 참조) 홈 부위 내의 계측두께 t_m은 다음 기준 중에서 작은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p> $t_m \geq 0.75(t_{as-built} - t_{vol add}) \quad \text{mm}$ $t_m \geq t_{ren} - 0.5 \quad \text{mm}$ <p>다만,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p> $t_m = 6 \quad \text{mm}$ <p>〈새롭게 추가〉</p> <p>(나) (가)에 규정된 것보다 큰 홈부식을 갖는 구조부재는 판/보강재에 걸친 평균계측두께를 사용하여 산적화물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1편) 13장, 이중선체 유조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2편) 12장 또는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3편) 1부 13장에 정의된 일반부식에 대한 해당 기준에 기초하여 평가되어야 한다.</p> <p>〈이하 생략〉</p>	<p>(2) 단부부식에 대한 허용기준</p> <p>(가) 면재 또는 평강 보강재의 경우에는 웨브의 단부부식의 전체 부식 높이가 해당 보강재 면재의 폭 또는 웨브의 높이의 25% 미만인 경우(그림 1.2.2 참조) 계측두께 t_m은 다음 기준 중에서 작은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p> $t_m \geq 0.7(t_{as-built} - t_{vol add}) \quad \text{mm}$ $t_m \geq t_{ren} - 1 \quad \text{mm}$ <p>여기서,</p> <p>t_{as-built}, t_{vol add}, t_{ren}, t_c 및 t_m은 3장 105. 2. (1), (나) 참조 (2019)</p> <p>(나) ~ (다) 〈현행과 동일〉.</p> <p>(3) 홈부식에 대한 허용기준</p> <p>(가) 홈의 폭이 웨브높이의 최대 15% 이지만 30 mm 이하인 경우(그림 1.2.3 참조) 홈 부위 내의 계측두께 t_m은 다음 기준 중에서 작은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p> $t_m \geq 0.75(t_{as-built} - t_{vol add}) \quad \text{mm}$ $t_m \geq t_{ren} - 0.5 \quad \text{mm}$ <p>다만,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p> $t_m = 6 \quad \text{mm}$ <p>여기서,</p> <p>t_{as-built}, t_{vol add}, t_{ren}, t_c 및 t_m은 3장 105. 2. (1), (나) 참조 (2019)</p> <p>(나) 〈현행과 동일〉</p> <p>〈이하 현행과 동일〉</p>

현행	개정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산적화물선</p> <p>201. 일반 <생략> 202. 연차검사 1. 일반 (1) 연차검사 시기는 2장 201.에 따른다. (2) 검사는 선체, 노천갑판, 창구덮개, 코밍 및 배관장치 등이 만족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u>시행한다.</u> <추가> <생략> 3. 노천갑판, 창구덮개 및 코밍의 검사 (1) 전회 검사 이후 창구덮개, 창구코밍, 고박설비 및 폐쇄장치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3) <생략> (4) 창구덮개의 고박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 선급과 협의하여 수리를 하여야 한다. <추가> <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산적화물선</p> <p>201. 일반 <현행과 동일> 202. 연차검사 1. 일반 (1) 연차검사 시기는 2장 201.에 따른다. (2) 검사는 선체, 노천갑판, 창구덮개, 코밍 및 배관장치 등이 만족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행 <u>한다</u>하고 <u>정비기록 및 이전 검사보고서에서 식별된 평형수탱크나 지역(areas)의 부식 방지시스템의 상태와 범위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2019)</u> <현행과 동일> 3. 노천갑판, 창구덮개 및 코밍의 검사 (1) 전회 검사 이후 창구덮개, 창구코밍, 고박설비 및 폐쇄장치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3) <현행과 동일> (4) 창구덮개의 고박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 선급과 협의하여 수리를 하여야 한다. <u>창구덮개 및 창구코밍이 대대적으로 수리된 경우, 고박장치의 강도는 규칙 7편 3장 9절 905. 폐쇄설비에 따라서 최신화되어야 한다. (2019)</u> <이하 현행과 동일></p>

현행	개정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유조선</p> <p>301. <생략> 302. 연차검사</p> <p>1. 일반</p> <p>(1) 연차검사 시기는 2장 201.에 따른다. (2) 검사는 선체 및 배관장치 등이 만족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추가></p> <p><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유조선</p> <p>301. <현행과 동일> 302. 연차검사</p> <p>1. 일반</p> <p>(1) 연차검사 시기는 2장 201.에 따른다. (2) 검사는 선체 및 배관장치 등이 만족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행한다하고 <u>정비기록 및 이전 검사보고서에서 식별된 평형수탱크나 지역(areas)의 부식방지시스템의 상태와 범위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2019)</u></p> <p><현행과 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절 케미컬탱커</p> <p>401. <생략> 402. 연차검사</p> <p>1. 일반</p> <p>(1) 연차검사 시기는 2장 201.에 따른다. (2) 검사는 선체 및 배관장치 등이 만족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추가></p> <p><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절 케미컬탱커</p> <p>401. <현행과 동일> 402. 연차검사</p> <p>1. 일반</p> <p>(1) 연차검사 시기는 2장 201.에 따른다. (2) 검사는 선체 및 배관장치 등이 만족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행한다하고 <u>정비기록 및 이전 검사보고서에서 식별된 평형수탱크나 지역(areas)의 부식방지시스템의 상태와 범위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2019)</u></p> <p><현행과 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절 이중선체 유조선</p> <p>501. 일반 <생략> 502. 연차검사</p> <p>1. 일반</p> <p>(1) 연차검사 시기는 2장 201.에 따른다. (2) 검사는 선체 및 배관장치 등이 만족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추가></p> <p><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절 이중선체 유조선</p> <p>501. 일반 <현행과 동일> 502. 연차검사</p> <p>1. 일반</p> <p>(1) 연차검사 시기는 2장 201.에 따른다. (2) 검사는 선체 및 배관장치 등이 만족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행한다하고 <u>정비기록 및 이전 검사보고서에서 식별된 평형수탱크나 지역(areas)의 부식방지시스템의 상태와 범위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2019)</u></p> <p><이하 현행과 동일></p>

현 행

표 1.3.10 이중선체 유조선의 정기검사 시 정밀검사 최소범위¹⁾ 【지침 참조】

제1차 정기검사	제2차 정기검사	제3차 정기검사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개의 평형수탱크²⁾ 내 웹프레임 1개 (*1) 2. 1개의 화물유탱크 내 갑판트랜스버스 1개 (*2) 3. 1개의 평형수탱크²⁾ 내 횡격벽 1개 (*4) 4. 1개의 중앙 화물유탱크³⁾ 내 횡격벽 1개 (*5) 5. 1개의 윙 화물유탱크 내 횡격벽 1개 (*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개의 평형수탱크²⁾ 내 모든 웹프레임 (*1) 2. 1항 이외의 나머지 평형수탱크 내 각 1개의 웹프레임에 대하여 너클지역 및 상부(약 5m) (*6) 3. 2개의 화물유탱크 내 각 1개의 갑판트랜스버스 (*2) 4. 각 평형수탱크²⁾ 내 각 1개의 횡격벽 (*4) 5. 2개의 중앙 화물유탱크³⁾ 내 각 1개의 횡격벽 (*5) 6. 1개의 윙 화물유탱크 내 횡격벽 1개 (*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평형수탱크 내 모든 웹프레임 (*1) 2. 1개의 화물유탱크 내 모든 웹프레임(있는 경우 갑판트랜스버스 및 크로스타이 포함) (*7) 3. 2항 이외의 나머지 화물유탱크 내 웹프레임 1개 (있는 경우 갑판트랜스버스 및 크로스타이 포함) (*7) 4. 모든 화물유탱크 (*3) 및 평형수탱크 (*4) 내 모든 횡격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차 정기검사 사항 2.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의 횡방향부재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기 표에서 (*1)부터 (*7)은 지침 부록 1-6에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지침 참조】 (*1) ~ (*7) <생략> 2) 평형수탱크(ballast tank)라 함은 그 탱크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이중저탱크에 이중선측탱크 및 이중갑판탱크(있는 경우)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중앙중격벽이 있고 중앙 화물유탱크가 없는 경우 윙탱크 내의 횡격벽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 정 사 항

표 1.3.10 이중선체 유조선의 정기검사 시 정밀검사 최소범위¹⁾ 【지침 참조】

제1차 정기검사	제2차 정기검사	제3차 정기검사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
1. 1개의 평형수탱크 ²⁾ 내 웹프레임 1개 (*1) 2. 1개의 화물유탱크 내 갑판트랜스버스 1개 (*2) 3. 1개의 평형수탱크 ²⁾ 내 횡격벽 1개 (*4) 4. 1개의 중앙 화물유탱크 ³⁾ 내 횡격벽 1개 (*5) 5. 1개의 윙 화물유탱크 내 횡격벽 1개 (*5)	1. 1개의 평형수탱크 ²⁾ 내 모든 웹프레임 (*1) 2. 1항 이외의 나머지 평형수탱크 내 각 1개의 웹프레임에 대하여 너클지역 및 상부(약 5m) (*6) 3. 2개의 화물유탱크 내 각 1개의 갑판트랜스버스 (*2) 4. 각 평형수탱크 ²⁾ 내 각 1개의 횡격벽 (*4) 5. 2개의 중앙 화물유탱크 ³⁾ 내 각 1개의 횡격벽 (*5) 6. 1개의 윙 화물유탱크 내 횡격벽 1개 (*5)	1. 모든 평형수탱크 내 모든 웹프레임 (*1) 2. 1개의 화물유탱크 내 모든 웹프레임(있는 경우 갑판트랜스버스 및 크로스타이 포함) (*7) 3. 2항 이외의 나머지 화물유탱크 내 웹프레임 1개 (있는 경우 갑판트랜스버스 및 크로스타이 포함) (*7) 4. 모든 화물유탱크 (*3) 및 평형수탱크 (*4) 내 모든 횡격벽	1. 제3차 정기검사 사항 2.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의 횡방향부재

(비고)

- 1) 상기 표에서 (*1)부터 (*7)은 **지침 부록 1-6**에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지침 참조】
 (*1) ~ (*7) <현행과 동일>
- 2) 평형수탱크(ballast tank)라 함은 ~~크 탱크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이중저탱크에 이중선측탱크 및 이중갑판탱크(있는 경우)를 합한 것을 말한다. 선수 및 선미피크탱크와는 별도로 평형수탱크는 다음과 같음을 의미한다.~~
 - 중방향 중앙거더가 수밀이 되지 않아서 이중저탱크가 좌현에서 우현까지의 독특한 구획일 경우, 좌현 또는 우현에 위치한 모든 평형수구획(호퍼탱크, 선측탱크 및 이중갑판탱크(이중저 탱크와 분리된 경우)에 추가하여 좌현 및 우현이 합쳐진 이중저탱크
 - 중방향 중앙거더가 수밀이 되서 우현 이중저탱크가 좌현 이중저탱크와 분리될 경우, 좌현 또는 우현에 있는 모든 평형수구획(이중저 탱크, 호퍼탱크, 선측탱크 및 이중갑판탱크) (2019)
- 3) 중앙중격벽이 있고 중앙 화물유탱크가 없는 경우 윙탱크 내의 횡격벽을 검사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절 이중선체 산적화물선</p> <p>601. 일반 <생략></p> <p>602. 연차검사</p> <p>1. 일반</p> <p>(1) 연차검사 시기는 2장 201.에 따른다.</p> <p>(2) 검사는 선체, 노천갑판, 창구덮개, 코밍 및 배관장치 등이 만족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행한다.</p> <p><추가></p> <p><생략></p> <p>3. 노천갑판, 창구덮개 및 코밍의 검사</p> <p>(1) 전회 검사 이후 창구덮개, 창구코밍, 고박설비 및 폐쇄장치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p> <p>(2)~(3) <현행과 동일></p> <p>(4) 창구덮개의 고박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 선급과 협의하여 수리를 하여야 한다.</p> <p><추가></p> <p><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절 이중선체 산적화물선</p> <p>601. 일반 <현행과 동일></p> <p>602. 연차검사</p> <p>1. 일반</p> <p>(1) 연차검사 시기는 2장 201.에 따른다.</p> <p>(2) 검사는 선체, 노천갑판, 창구덮개, 코밍 및 배관장치 등이 만족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행 <u>한다</u>하고 <u>정비기록 및 이전 검사보고서에서 식별된 평형수탱크나 지역(areas)의 부식 방지시스템의 상태와 범위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2019)</u></p> <p><현행과 동일></p> <p>3. 노천갑판, 창구덮개 및 코밍의 검사</p> <p>(1) 전회 검사 이후 창구덮개, 창구코밍, 고박설비 및 폐쇄장치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p> <p>(2)~(3) <현행과 동일></p> <p>(4) 창구덮개의 고박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 선급과 협의하여 수리를 하여야 한다. <u>창구덮개 및 창구코밍이 대적으로 수리된 경우, 고박장치의 강도는 규칙 7편 3장 9절 905. 폐쇄설비에 따라서 최신화되어야 한다. (2019)</u></p> <p><이하 현행과 동일></p>

(2) 2019.07.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현행	개정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선급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p> <p>101. 용어의 정의</p> <p>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2장 및 3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9. <생략></p> <p>10. 대표적인 구역/탱크(representative space/tank)라 함은 유사한 형식과 용도를 가지며, 유사한 방식조치를 하고 있는 다른 구역/탱크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역/탱크를 말한다. 대표적인 구역/탱크를 선정할 때에는 본선의 운항 및 수리기록과 식별된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 및/또는 의심지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p> <p>11. ~ 14. <생략></p> <p>15. 방식조치(corrosion prevention system)라 함은 통상 전경화보호도장(full hard protective coating)을 말한다. 경화보호도장(hard protective coating)은 통상 에폭시(epoxy)도장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말한다. 다른 도장시스템(연화도장이나 반경화도장을 말하는 것은 아님)은 제조자의 사양에 적합하게 적용되고 유지, 보수할 경우 인정할 수 있다.</p> <p>여기서 연화도장이라 함은 통상 (식물성이나 석유)기름 또는 라놀린(lanolin : sheep wool grease)에 기초한 것으로서 접촉되거나 작은 기계적 충격에도 쉽게 벗겨지는 연질의 도장을 말하며, 반경화도장이라 함은 비록 접촉되거나 도장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단단하지만 건조되거나 고화된 후에도 계속하여 유연성을 가지는 도장을 말한다.</p> <p><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선급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p> <p>101. 용어의 정의</p> <p>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2장 및 3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9. <현행과 동일></p> <p>10. 대표적인 구역/탱크(representative space/tank)라 함은 유사한 형식과 용도를 가지며, 유사한 방식조치 부식방지시스템을 틀하고 있는 다른 구역/탱크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역/탱크를 말한다. 대표적인 구역/탱크를 선정할 때에는 본선의 운항 및 수리기록과 식별된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 및/또는 의심지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019)</p> <p>11. ~ 14. <현행과 동일></p> <p>15. 방식조치 부식방지시스템(corrosion prevention system)이라 함은 통상 전경화보호도장(full hard protective coating)을 말한다. 경화보호도장(hard protective coating)은 통상 에폭시(epoxy)도장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말한다. 다른 도장시스템(연화도장이나 반경화도장을 말하는 것은 아님)은 제조자의 사양에 적합하게 적용되고 유지, 보수할 경우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연화도장이라 함은 통상 (식물성이나 석유)기름 또는 라놀린(lanolin : sheep wool grease)에 기초한 것으로서 접촉되거나 작은 기계적 충격에도 쉽게 벗겨지는 연질의 도장을 말하며, 반경화도장이라 함은 비록 접촉되거나 도장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단단하지만 건조되거나 고화된 후에도 계속하여 유연성을 가지는 도장을 말한다. (2019)</p> <p><이하 현행과 동일></p>

현행	개정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연차검사</p> <p>201. ~ 203. <생략></p> <p>204. 선종별 추가요건</p> <p>1. 유조선(탱커 포함) : 【지침 참조】</p> <p>추가로 다음과 같이 가능한 범위에서 전반적인 현상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효력시험 및 개방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p> <p>(1) 갑판포말장치 및 포말용액 공급장치를 점검하고 시스템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소화전에서 요구되는 압력으로 최소 요구 개수의 물분사가 가능한지 시험한다.</p> <p>(2) 불활성가스장치 검사 특히,</p> <p>(가) 가스 또는 액의 누설 흔적이 있는지 외관검사한다.</p> <p>(나) 양쪽 불활성가스송풍기의 적합한 작동상태를 확인한다.</p> <p>(다) 가스세정기실의 통풍장치 작동을 관찰한다.</p> <p>(라) <u>갑판 수밀봉의 자동공급 및 배출을 점검한다.</u></p> <p>(마)부터 (사) <생략></p> <p>(아) 실행가능한 한 불활성가스장치의 다음 경보와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모의시험을 한다. 【지침 참조】</p> <p>(a)부터 (b) <생략></p> <p>(c) <u>갑판 수밀봉으로</u> 공급 저압</p> <p><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연차검사</p> <p>201. ~ 203. <현행과 동일></p> <p>204. 선종별 추가요건</p> <p>1. 유조선(탱커 포함) : 【지침 참조】</p> <p>추가로 다음과 같이 가능한 범위에서 전반적인 현상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효력시험 및 개방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p> <p>(1) 갑판포말장치 및 포말용액 공급장치를 점검하고 시스템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소화전에서 요구되는 압력으로 최소 요구 개수의 물분사가 가능한지 시험한다.</p> <p>(2) 불활성가스장치 검사 특히,</p> <p>(가) 가스 또는 액의 누설 흔적이 있는지 외관검사한다.</p> <p>(나) 양쪽 불활성가스송풍기의 적합한 작동상태를 확인한다.</p> <p>(다) 가스세정기실의 통풍장치 작동을 관찰한다.</p> <p>(라) <u>데크 씰(deck seal) 갑판 수밀봉 또는 이중차단 배출장치, 및 역류방지밸브의 외관을 검사한다. 또한, 데크 씰 갑판 수밀봉의 자동공급 및 배출을 점검 또는 이중차단 배출밸브의 작동을 점검하고, 역류방지밸브의 작동을 점검한다. (2019)</u></p> <p>(마)부터 (사) <현행과 동일></p> <p>(아) 실행가능한 한 불활성가스장치의 다음 경보와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모의시험을 한다. 【지침 참조】</p> <p>(a)부터 (b) <생략></p> <p>(c) <u>데크씰로</u> 공급 저압 (2019)</p> <p><이하 현행과 동일></p>

현행	개정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중간검사</p> <p>301. <생략></p> <p>302. 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p> <p>중간검사는 연차검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한다.</p> <p>1. 평형수탱크 및 화물구역에 대한 내부검사는 표 1.2.1에 따른다.</p> <p>표 1.2.1 평형수탱크 및 화물구역 내부검사 (비고)</p> <p>1) 경화보호도장을 하지 않았거나, 연화도장 또는 반경화도장을 한 경우, 또는 도장상태가 불량한 경우 추가로 같은 형식의 다른 평형수탱크까지 확대하여 검사한다.</p> <p>2) 내부검사 시 육안으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u>방식 조치</u>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p> <p>3) 이중저 평형수탱크를 제외하고 평형수탱크에 대하여 경화보호도장을 하지 않았거나, 연화도장 또는 반경화도장을 한 경우, 또는 도장이 불량한 상태이나 재도장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구역은 매년 내부검사를 하여야 한다.</p> <p><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중간검사</p> <p>301. <현행과 동일></p> <p>302. 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p> <p>중간검사는 연차검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한다.</p> <p>1. 평형수탱크 및 화물구역에 대한 내부검사는 표 1.2.1에 따른다.</p> <p>표 1.2.1 평형수탱크 및 화물구역 내부검사 (비고)</p> <p>1) 경화보호도장을 하지 않았거나, 연화도장 또는 반경화도장을 한 경우, 또는 도장상태가 불량한 경우 추가로 같은 형식의 다른 평형수탱크까지 확대하여 검사한다.</p> <p>2) 내부검사 시 육안으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u>부식 방지시스템 방식조치</u>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2019)</p> <p>3) 이중저 평형수탱크를 제외하고 평형수탱크에 대하여 경화보호도장을 하지 않았거나, 연화도장 또는 반경화도장을 한 경우, 또는 도장이 불량한 상태이나 재도장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구역은 매년 내부검사를 하여야 한다.</p> <p><이하 현행과 동일></p>

현 행	개 정 사 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선급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 제 3 절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절 정기검사(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p> <p>401. 검사시기</p> <p>1. ~ 2. <생략></p> <p>3. 정기검사 지정일전 3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시행한 경우 차기 정기검사 시기는 원래의 정기검사 지정일의 다음 날로부터 산정하며, 정기검사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앞당겨 정기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정기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차기 정기검사일로 지정한다. <u>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선박이 계류되었거나 운항을 하지 아니하였고</u> 선박소유자가 기한이 지난 검사만을 시행할 것을 선택한 경우, 차기 정기검사 시기는 원래의 정기검사 지정일의 다음 날로부터 산정하며, 만일 선박소유자가 차기 도래하는 정기검사를 시행할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정기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차기 정기검사일로 지정한다.</p> <p><이하 생략></p> <p>해당 영문</p> <p>3. ~. <u>In cases where the vessel has been laid up or has been out of service for a considerable period because of a major repair or modification</u> and the Owner elects to only carry out the overdue surveys, the next period of class will start from the expiry date of the Special Survey. If the Owner elects to carry out the next due Special Survey, the next Special Survey shall be assigned at the date of 5 years after the completion date of the concerned Special Survey. (UR Z7 or Z10)</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선급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 제 3 절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절 정기검사(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p> <p>401. 검사시기</p> <p>1. ~ 2. <현행과 동일></p> <p>3. 정기검사 지정일전 3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시행한 경우 차기 정기검사 시기는 원래의 정기검사 지정일의 다음 날로부터 산정하며, 정기검사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앞당겨 정기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정기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차기 정기검사일로 지정한다. <u>계선되었거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운항을 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하여</u> 선박소유자가 기한이 지난 검사만을 시행할 것을 선택한 경우, 차기 정기검사 시기는 원래의 정기검사 지정일의 다음 날로부터 산정하며, 만일 선박소유자가 차기 도래하는 정기검사를 시행할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정기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차기 정기검사일로 지정한다. (2019)</p> <p><이하 현행과 동일></p>

현 행	개 정 사 항												
<p>표 1.2.4 정기검사 시 두께계측 최소범위</p> <p>1. 일반선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1차 ~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 <p>(비고)</p> <p>1) ~ 2) 〈생략〉</p> <p>3) 내부재에 대한 두께계측은 경화보호도장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p> <p>〈이하 생략〉</p> </td> </tr> </table> <p>2. 기타선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1차 정기검사 ~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 <p>(비고)</p> <p>1) 이 표의 적용상 기타선박이라 함은 다음 선박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운반선은 제외한다.</p> <p>지침 부록1-1. 1.1의 선종 중</p> <p>- 12, 13의 선박</p> <p>- 15, 16, 17, 19, 20 및 26부터 30의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이고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p> <p>2) 두께계측 위치는 가장 부식이 심하다고 간주되는 대표적인 부위를 선정한다.</p> <p>3) 내부 구조부재의 두께계측은 경화보호도장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p> <p>〈이하 생략〉</p> </td> </tr> </table>	제1차 ~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	〈생략〉	<p>(비고)</p> <p>1) ~ 2) 〈생략〉</p> <p>3) 내부재에 대한 두께계측은 경화보호도장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p> <p>〈이하 생략〉</p>	제1차 정기검사 ~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	〈생략〉	<p>(비고)</p> <p>1) 이 표의 적용상 기타선박이라 함은 다음 선박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운반선은 제외한다.</p> <p>지침 부록1-1. 1.1의 선종 중</p> <p>- 12, 13의 선박</p> <p>- 15, 16, 17, 19, 20 및 26부터 30의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이고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p> <p>2) 두께계측 위치는 가장 부식이 심하다고 간주되는 대표적인 부위를 선정한다.</p> <p>3) 내부 구조부재의 두께계측은 경화보호도장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p> <p>〈이하 생략〉</p>	<p>표 1.2.4 정기검사 시 두께계측 최소범위</p> <p>1. 일반선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1차 ~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동일〉</td> </tr> <tr> <td> <p>(비고)</p> <p>1) ~ 2) 〈현행과 동일〉</p> <p>3) 내부재에 대한 두께계측의 범위는 경화보호도장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특별히 고려 <u>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u>할 수 있다. <u>(2019)</u></p> <p>〈이하 현행과 동일〉</p> </td> </tr> </table> <p>2. 기타선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1차 정기검사 ~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동일〉</td> </tr> <tr> <td> <p>(비고)</p> <p>1) 이 표의 적용상 기타선박이라 함은 다음 선박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운반선은 제외한다.</p> <p>지침 부록1-1. 1.1의 선종 중</p> <p>- 12, 13의 선박</p> <p>- 15, 16, 17, 19, 20 및 26부터 30의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이고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p> <p>2) 두께계측 위치는 가장 부식이 심하다고 간주되는 대표적인 부위를 선정한다.</p> <p>3) 내부 구조부재의 두께계측 범위는 경화보호도장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특별히 고려 <u>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u>할 수 있다. <u>(2019)</u></p> <p>〈이하 현행과 동일〉</p> </td> </tr> </table>	제1차 ~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	〈현행과 동일〉	<p>(비고)</p> <p>1) ~ 2) 〈현행과 동일〉</p> <p>3) 내부재에 대한 두께계측의 범위는 경화보호도장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특별히 고려 <u>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u>할 수 있다. <u>(2019)</u></p> <p>〈이하 현행과 동일〉</p>	제1차 정기검사 ~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	〈현행과 동일〉	<p>(비고)</p> <p>1) 이 표의 적용상 기타선박이라 함은 다음 선박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운반선은 제외한다.</p> <p>지침 부록1-1. 1.1의 선종 중</p> <p>- 12, 13의 선박</p> <p>- 15, 16, 17, 19, 20 및 26부터 30의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이고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p> <p>2) 두께계측 위치는 가장 부식이 심하다고 간주되는 대표적인 부위를 선정한다.</p> <p>3) 내부 구조부재의 두께계측 범위는 경화보호도장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특별히 고려 <u>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u>할 수 있다. <u>(2019)</u></p> <p>〈이하 현행과 동일〉</p>
제1차 ~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													
〈생략〉													
<p>(비고)</p> <p>1) ~ 2) 〈생략〉</p> <p>3) 내부재에 대한 두께계측은 경화보호도장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p> <p>〈이하 생략〉</p>													
제1차 정기검사 ~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													
〈생략〉													
<p>(비고)</p> <p>1) 이 표의 적용상 기타선박이라 함은 다음 선박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운반선은 제외한다.</p> <p>지침 부록1-1. 1.1의 선종 중</p> <p>- 12, 13의 선박</p> <p>- 15, 16, 17, 19, 20 및 26부터 30의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이고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p> <p>2) 두께계측 위치는 가장 부식이 심하다고 간주되는 대표적인 부위를 선정한다.</p> <p>3) 내부 구조부재의 두께계측은 경화보호도장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p> <p>〈이하 생략〉</p>													
제1차 ~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													
〈현행과 동일〉													
<p>(비고)</p> <p>1) ~ 2) 〈현행과 동일〉</p> <p>3) 내부재에 대한 두께계측의 범위는 경화보호도장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특별히 고려 <u>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u>할 수 있다. <u>(2019)</u></p> <p>〈이하 현행과 동일〉</p>													
제1차 정기검사 ~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													
〈현행과 동일〉													
<p>(비고)</p> <p>1) 이 표의 적용상 기타선박이라 함은 다음 선박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운반선은 제외한다.</p> <p>지침 부록1-1. 1.1의 선종 중</p> <p>- 12, 13의 선박</p> <p>- 15, 16, 17, 19, 20 및 26부터 30의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이고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p> <p>2) 두께계측 위치는 가장 부식이 심하다고 간주되는 대표적인 부위를 선정한다.</p> <p>3) 내부 구조부재의 두께계측 범위는 경화보호도장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특별히 고려 <u>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u>할 수 있다. <u>(2019)</u></p> <p>〈이하 현행과 동일〉</p>													

현행	개정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절 입거검사</p> <p>601.~ 604. <생략> 605. 입거주기 연장제도</p> <p>1. 일반 <생략> 2. 필수요건</p> <p>“입거주기 연장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요건은 다음과 같다.</p> <p>(1) 지침 부록 1-13에 따른 선박소유자 선체 점검 및 정비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것</p> <p>(2) 2011년 7월 1일 이후 건조계약되어 제조중등록검사를 받고 등록되는 선박은 604.의 3항 (8)호에 따른 IWS 부호를 가질 것. 그 외의 선박은 604.의 2항 및 3항에 따라 수중검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p> <p>(3) STCM(Stern tube condition monitoring) 부호를 가질 것. STCM 부호가 없는 선박인 경우 승인된 설계의 축베어링 및 밀봉장치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감시절차를 시행할 것</p> <p>(4) 2011년 7월 1일 이후 건조 계약되는 선박인 경우 방오도료를 제외하고 만재흡수선 아래 외판에 대한 도장시스템의 건조막 두께(DFT)는 300 μm 이상이고 그 외의 선박은 250 μm 이상일 것. 이에 추가하여 아노드(anode) 및/또는 외부전원식음극방식장치(impressed current cathodic protection system)가 설치되고 유지될 것</p> <p>(5) (4)호를 대신하여 적용된 도장시스템이 7.5년간 지속되도록 설계된 것임을 도장제조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는 경우 우리 선급은 다른 도장시스템을 인정할 수 있다.</p> <p>(6) 평형수탱크는 <u>방식조치가</u> 되어있고 양호한 도장상태를 유지할 것</p> <p>(7) 만재흡수선 아래의 선체에 대하여는 지적사항이 없을 것</p> <p><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절 입거검사</p> <p>601.~ 604. <현행과 동일> 605. 입거주기 연장제도</p> <p>1. 일반 <현행과 동일> 2. 필수요건</p> <p>“입거주기 연장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요건은 다음과 같다.</p> <p>(1) 지침 부록 1-13에 따른 선박소유자 선체 점검 및 정비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것</p> <p>(2) 2011년 7월 1일 이후 건조계약되어 제조중등록검사를 받고 등록되는 선박은 604.의 3항 (8)호에 따른 IWS 부호를 가질 것. 그 외의 선박은 604.의 2항 및 3항에 따라 수중검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p> <p>(3) STCM(Stern tube condition monitoring) 부호를 가질 것. STCM 부호가 없는 선박인 경우 승인된 설계의 축베어링 및 밀봉장치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감시절차를 시행할 것</p> <p>(4) 2011년 7월 1일 이후 건조 계약되는 선박인 경우 방오도료를 제외하고 만재흡수선 아래 외판에 대한 도장시스템의 건조막 두께(DFT)는 300 μm 이상이고 그 외의 선박은 250 μm 이상일 것. 이에 추가하여 아노드(anode) 및/또는 외부전원식음극방식장치(impressed current cathodic protection system)가 설치되고 유지될 것</p> <p>(5) (4)호를 대신하여 적용된 도장시스템이 7.5년간 지속되도록 설계된 것임을 도장제조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는 경우 우리 선급은 다른 도장시스템을 인정할 수 있다.</p> <p>(6) 평형수탱크는 <u>부식방지시스템이 방식조치가</u> 되어있고 양호한 도장상태를 유지할 것 (2019)</p> <p>(7) 만재흡수선 아래의 선체에 대하여는 지적사항이 없을 것</p> <p><이하 현행과 동일></p>

현행	개정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 14 절 일반건화물선의 선체검사</p> <p>1401. 일반 <생략></p> <p>1402. 연차검사</p> <p>1. ~ 4. <생략></p> <p>5. 화물창 검사</p> <p>연차검사 시기의 화물창에 대한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는 다음에 따른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40%;">10년 <선령 ≤ 15년³⁾></th> <th style="width: 50%;">15년 <선령^{1), 2), 3)}></th> </tr> </thead> <tbody> <tr> <td>현상 검사</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정밀 검사</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기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선외배출관을 포함한 화물창 내의 모든 관장치 및 관통부 검사</td> </tr> </tbody> </table> <p>(비고)</p> <p>1) 화물창내의 <u>보호도장</u>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 정밀검사 범위를 <u>특별히 고려</u>할 수 있다. <이하 생략></p> <p>1403. 중간검사</p> <p>1. 일반 <생략></p> <p>2. 평형수탱크 검사</p> <p>중간검사 시기의 평형수탱크에 대한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5년 <선령 ≤ 10년^{1), 2), 3)}></th> <th style="width: 33%;">10년 <선령 ≤ 15년^{1), 3)}></th> <th style="width: 34%;">15년 <선령</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3.의 1항 (4)호에 따른다.</td> </tr> </tbody> </table> <p>(비고)</p> <p>1) 현상검사 시 육안으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u>방식조치</u>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이하 생략></p>		10년 <선령 ≤ 15년 ³⁾ >	15년 <선령 ^{1), 2), 3)} >	현상 검사	<생략>		정밀 검사	<생략>		기타	-	선외배출관을 포함한 화물창 내의 모든 관장치 및 관통부 검사	5년 <선령 ≤ 10년 ^{1), 2), 3)} >	10년 <선령 ≤ 15년 ^{1), 3)} >	15년 <선령	<생략>	<생략>	1403.의 1항 (4)호에 따른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 14 절 일반건화물선의 선체검사</p> <p>1401. 일반 <현행과 동일></p> <p>1402. 연차검사</p> <p>1. ~ 4. <현행과 동일></p> <p>5. 화물창 검사</p> <p>연차검사 시기의 화물창에 대한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는 다음에 따른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40%;">10년 <선령 ≤ 15년³⁾></th> <th style="width: 50%;">15년 <선령^{1), 2), 3)}></th> </tr> </thead> <tbody> <tr> <td>현상 검사</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동일></td> </tr> <tr> <td>정밀 검사</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동일></td> </tr> <tr> <td>기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선외배출관을 포함한 화물창 내의 모든 관장치 및 관통부를 검사한다.</td> </tr> </tbody> </table> <p>(비고)</p> <p>1) 화물창내의 <u>경화보호도장</u>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 정밀검사 범위를 <u>특별히 고려</u>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u>감소시켜 시행</u>할 수 있다. (2019) <이하 현행과 동일></p> <p>1403. 중간검사</p> <p>1. 일반 <현행과 동일></p> <p>2. 평형수탱크 검사</p> <p>중간검사 시기의 평형수탱크에 대한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5년 <선령 ≤ 10년^{1), 2), 3)}></th> <th style="width: 33%;">10년 <선령 ≤ 15년^{1), 3)}></th> <th style="width: 34%;">15년 <선령</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동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동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3.의 1항 (4)호에 따른다.</td> </tr> </tbody> </table> <p>(비고)</p> <p>1) 현상검사 시 육안으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u>부식방지시스템 방식조치</u>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2019) <이하 현행과 동일></p>		10년 <선령 ≤ 15년 ³⁾ >	15년 <선령 ^{1), 2), 3)} >	현상 검사	<현행과 동일>		정밀 검사	<현행과 동일>		기타	-	선외배출관을 포함한 화물창 내의 모든 관장치 및 관통부를 검사한다.	5년 <선령 ≤ 10년 ^{1), 2), 3)} >	10년 <선령 ≤ 15년 ^{1), 3)} >	15년 <선령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403.의 1항 (4)호에 따른다.
	10년 <선령 ≤ 15년 ³⁾ >	15년 <선령 ^{1), 2), 3)} >																																			
현상 검사	<생략>																																				
정밀 검사	<생략>																																				
기타	-	선외배출관을 포함한 화물창 내의 모든 관장치 및 관통부 검사																																			
5년 <선령 ≤ 10년 ^{1), 2), 3)} >	10년 <선령 ≤ 15년 ^{1), 3)} >	15년 <선령																																			
<생략>	<생략>	1403.의 1항 (4)호에 따른다.																																			
	10년 <선령 ≤ 15년 ³⁾ >	15년 <선령 ^{1), 2), 3)} >																																			
현상 검사	<현행과 동일>																																				
정밀 검사	<현행과 동일>																																				
기타	-	선외배출관을 포함한 화물창 내의 모든 관장치 및 관통부를 검사한다.																																			
5년 <선령 ≤ 10년 ^{1), 2), 3)} >	10년 <선령 ≤ 15년 ^{1), 3)} >	15년 <선령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403.의 1항 (4)호에 따른다.																																			

현행	개정사항
<p>1404. 정기검사</p> <p>1. 일반</p> <p>(1) ~ (5) <생략></p> <p>(6) 보이드스페이스로 개조된 평형수탱크의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은 평형수탱크 요건에 따라 검사한다. <생략></p> <p>2. 탱크 보호(tank protection)</p> <p>(1) 평형수탱크에 <u>방식조치</u>가 되어있는 경우 그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p> <p>(2) <생략></p> <p>(3) 구역 내의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u>할 수 있다.</p> <p>3. 창구덮개 및 코밍 <생략></p> <p>4.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 범위</p> <p>(1) ~ (2) <생략></p> <p>(3) 검사대상구역의 정비, <u>방식조치</u>의 상태 및 이용가능한 정보에 따라 유사한 구역이나 유사한 선박에 결함이 있는 구조적 배치 또는 상세를 가지는 경우를 고려하여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검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p> <p>(4)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구역 내의 지역인 경우 표 1.2.8에 따른 정밀검사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u>할 수 있다. <생략></p> <p>5. 두께 계측의 범위 (2017)</p> <p>(1)~(2) <생략></p> <p>(3)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구역은 표 1.2.9에 따른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u>할 수 있다. (2017)</p> <p><이하 생략></p>	<p>1404. 정기검사</p> <p>1. 일반</p> <p>(1) ~ (5) <현행과 동일></p> <p>(6) 보이드스페이스로 개조된 평형수탱크의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은 평형수탱크 요건에 따라 검사한다. <u>구역 내의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의 범위를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할 수 있다. (2019)</u> <현행과 동일></p> <p>2. 탱크 보호(tank protection)</p> <p>(1) 평형수탱크에 <u>부식방지시스템 방식조치</u>가 되어있는 경우 그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 (2019)</p> <p>(2) <현행과 동일></p> <p>(3) 구역 내의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할 수 있다. (2019)</u></p> <p>3. 창구덮개 및 코밍 <현행과 동일></p> <p>4.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 범위</p> <p>(1) ~ (2) <현행과 동일></p> <p>(3) 검사대상구역의 정비, <u>부식방지시스템 방식조치</u>의 상태 및 이용가능한 정보에 따라 유사한 구역이나 유사한 선박에 결함이 있는 구조적 배치 또는 상세를 가지는 경우를 고려하여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검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019)</p> <p>(4)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구역 내의 지역인 경우 표 1.2.8에 따른 정밀검사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할 수 있다. (2019)</u> <현행과 동일></p> <p>5. 두께 계측의 범위 (2017)</p> <p>(1)~(2) <현행과 동일></p> <p>(3)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구역은 표 1.2.9에 따른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할 수 있다. (2019)</u> <이하 현행과 동일></p>

현행	개정사항								
<p>제 15 절 액화가스 산적운반선의 선체검사</p> <p>1501. ~ 1502. <생략> 1503. 중간검사</p> <p>1. 일반 <생략> 2. 평형수탱크 검사</p> <p>(1) 중간검사 시기의 평형수탱크에 대한 현상검사는 다음에 따른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5년 <선령 ≤ 10년^{1), 2), 3)}</th>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10년 <선령^{1), 3)}</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표적인 평형수탱크를 선정하여 현상검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모든 평형수탱크에 대하여 현상검사</td> </tr> </tbody> </table>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상검사 시 육안으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u>방식조치의</u>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2) 경화보호도장을 하지 않았거나, 연화도장 또는 반경화도장을 한 경우, 또는 도장상태가 불량한 경우 추가로 같은 형식의 다른 평형수탱크까지 확대하여 검사한다. 3) 이중저 평형수탱크를 제외하고 평형수탱크에 대하여 경화보호도장을 하지 않았거나, 연화도장 또는 반경화도장을 한 경우, 또는 도장이 불량한 상태이나 제도장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탱크는 매년 내부검사를 하여야 한다. 4) 이중저 평형수탱크에서 3)과 같은 상태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탱크는 매년 검사를 할 수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이하 생략></p>	5년 <선령 ≤ 10년 ^{1), 2), 3)}	10년 <선령 ^{1), 3)}	대표적인 평형수탱크를 선정하여 현상검사	모든 평형수탱크에 대하여 현상검사	<p>제 15 절 액화가스 산적운반선의 선체검사</p> <p>1501. ~ 1502. <현행과 동일> 1503. 중간검사</p> <p>1. 일반 <현행과 동일> 2. 평형수탱크 검사</p> <p>(1) 중간검사 시기의 평형수탱크에 대한 현상검사는 다음에 따른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5년 <선령 ≤ 10년^{1), 2), 3)}</th>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10년 <선령^{1), 3)}</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표적인 평형수탱크를 선정하여 현상검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모든 평형수탱크에 대하여 현상검사</td> </tr> </tbody> </table>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상검사 시 육안으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u>부식방지시스템 방식조치</u>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u>(2019)</u> 2) 경화보호도장을 하지 않았거나, 연화도장 또는 반경화도장을 한 경우, 또는 도장상태가 불량한 경우 추가로 같은 형식의 다른 평형수탱크까지 확대하여 검사한다. 3) 이중저 평형수탱크를 제외하고 평형수탱크에 대하여 경화보호도장을 하지 않았거나, 연화도장 또는 반경화도장을 한 경우, 또는 도장이 불량한 상태이나 제도장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탱크는 매년 내부검사를 하여야 한다. 4) 이중저 평형수탱크에서 3)과 같은 상태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탱크는 매년 검사를 할 수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이하 현행과 동일></p>	5년 <선령 ≤ 10년 ^{1), 2), 3)}	10년 <선령 ^{1), 3)}	대표적인 평형수탱크를 선정하여 현상검사	모든 평형수탱크에 대하여 현상검사
5년 <선령 ≤ 10년 ^{1), 2), 3)}	10년 <선령 ^{1), 3)}								
대표적인 평형수탱크를 선정하여 현상검사	모든 평형수탱크에 대하여 현상검사								
5년 <선령 ≤ 10년 ^{1), 2), 3)}	10년 <선령 ^{1), 3)}								
대표적인 평형수탱크를 선정하여 현상검사	모든 평형수탱크에 대하여 현상검사								

현 행	개 정 사 항								
<p>(2) 중간검사 시기의 평형수탱크에 대한 정밀검사 최소범위는 다음에 따른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0년 < 선령 ≤ 15년</td> <td>15년 < 선령</td> </tr> <tr> <td><생략></td> <td><생략></td> </tr> </table>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기 표에서 (*1) 및 (*2)는 다음을 의미한다. (*1) : 인접하는 구조부재를 포함한 트랜스버스 웹프레임 전체 (*2) : 거더와 인접하는 구조부재 및 인접하는 종격벽구조를 포함한 횡격벽 전체 2) 평형수탱크는 톱사이드, 이중선측, 이중저, 호퍼사이드 또는 이들이 연결된 구조 및 피크탱크(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u>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u> 탱크 내의 지역인 경우 우리 선급은 정밀검사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u>할 수 있다. 4) 중앙횡단면이 일반적인 화물선과 유사하고 독립형탱크 형식C를 갖는 선박인 경우 우리 선급은 정밀검사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u>할 수 있다. 5) 검사대상탱크의 정비, <u>방식조치</u>의 상태 및 다음의 경우를 고려하여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검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이용가능한 정보에 따라 유사한 탱크나 유사한 선박에 결합이 있는 구조적 배치 또는 상세를 가지는 탱크 - 치수를 경감하여 승인받은 구조를 가지는 탱크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p>	10년 < 선령 ≤ 15년	15년 < 선령	<생략>	<생략>	<p>(2) 중간검사 시기의 평형수탱크에 대한 정밀검사 최소범위는 다음에 따른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0년 < 선령 ≤ 15년</td> <td>15년 < 선령</td> </tr> <tr> <td><현행과 동일></td> <td><현행과 동일></td> </tr> </table>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기 표에서 (*1) 및 (*2)는 다음을 의미한다. (*1) : 인접하는 구조부재를 포함한 트랜스버스 웹프레임 전체 (*2) : 거더와 인접하는 구조부재 및 인접하는 종격벽구조를 포함한 횡격벽 전체 2) 평형수탱크는 톱사이드, 이중선측, 이중저, 호퍼사이드 또는 이들이 연결된 구조 및 피크탱크(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u>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u> 탱크 내의 지역인 경우 우리 선급은 정밀검사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u> <u>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u>할 수 있다. <u>(2019)</u> 4) 중앙횡단면이 일반적인 화물선과 유사하고 독립형탱크 형식C를 갖는 선박인 경우 우리 선급은 정밀검사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u> <u>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u>할 수 있다. <u>(2019)</u> 5) 검사대상탱크의 정비, <u>부식방지시스템 방식조치</u>의 상태 및 다음의 경우를 고려하여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검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u>(2019)</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이용가능한 정보에 따라 유사한 탱크나 유사한 선박에 결합이 있는 구조적 배치 또는 상세를 가지는 탱크 - 치수를 경감하여 승인받은 구조를 가지는 탱크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현행과 동일></p>	10년 < 선령 ≤ 15년	15년 < 선령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0년 < 선령 ≤ 15년	15년 < 선령								
<생략>	<생략>								
10년 < 선령 ≤ 15년	15년 < 선령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	개정사항
<p>1504. 정기검사</p> <p>1. 일반 (1)~(5) <생략> (6) <u>보이드스페이스로 개조된 평형수탱크의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은 평형수탱크의 요건에 따라 검사한다.</u></p> <p><생략></p> <p>2. 탱크 보호(tank protection) (1) 평형수탱크에 <u>방식조치가</u> 되어있는 경우 그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중저 평형수탱크를 제외하고 평형수탱크에 대하여 경화보호도장이 불량한 상태이나 재도장을 하지 않은 경우, 연화도장 또는 반경화도장을 한 경우, 또는 건조 시부터 경화보호도장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탱크는 매년 검사를 하여야 한다.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p> <p>(2) <생략> (3) 평형수탱크 내의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u>할 수 있다.</p> <p>3.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 범위 (1)~(3) <생략> (4)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탱크 내의 지역인 경우 표 1.2.10에 따른 정밀검사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u>할 수 있다.</p> <p>비고 : 자동공기관헤드의 검사에 대하여는 표 1.2.7을 참조. <생략></p> <p>4. 두께계측 범위 (1) ~ (2) <생략> (3)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탱크 내의 지역인 경우 표 1.2.11에 따른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u>할 수 있다. <이하 생략></p>	<p>1504. 정기검사</p> <p>1. 일반 (1)~(5) <현행과 동일> (6) 보이드스페이스로 개조된 평형수탱크의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은 평형수탱크 요건에 따라 검사한다. <u>구역 내의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의 범위를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할 수 있다. (2019)</u> <현행과 동일></p> <p>2. 탱크 보호(tank protection) (1) 평형수탱크에 <u>부식방지시스템이 방식조치가</u> 되어있는 경우 그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 (2019) 【지침 참조】</p> <p>(2) <현행과 동일> (3) 평형수탱크 내의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u>할 수 있다. (2019)</p> <p>3.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 범위 (1)~(3) <현행과 동일> (4)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탱크 내의 지역인 경우 표 1.2.10에 따른 정밀검사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u>할 수 있다. (2019)</p> <p>비고 : 자동공기관헤드의 검사에 대하여는 표 1.2.7을 참조. <현행과 동일></p> <p>4. 두께계측 범위 (1) ~ (2) <현행과 동일> (3)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탱크 내의 지역인 경우 표 1.2.11에 따른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u>할 수 있다. (2019) <이하 현행과 동일></p>

현 행

표 1.2.10 액화가스 산적운반선의 정기검사 시 정밀검사 최소범위

제1차 정기검사	제2차 정기검사	제3차 및 이후 정기검사
〈생략〉	〈생략〉	〈생략〉

(비고)

- 1) ~ 2) 〈생략〉
- 3) 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탱크 내의 지역인 경우 우리 선급은 정밀검사의 범위를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 4) 중앙횡단면이 일반적인 화물선과 유사하고 독립형탱크 형식C를 갖는 선박인 경우 우리 선급은 정밀검사의 범위를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 5) 검사대상탱크의 정비, 방식조치의 상태 및 다음의 경우를 고려하여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검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표 1.2.11 액화가스 산적운반선의 정기검사 시 두께계측 최소범위

제1차 정기검사	제2차 정기검사	제3차 정기검사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비고)

- 1) 최소한 1개의 횡단면은 중앙부 0.5 L 내의 평형수탱크(있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
- 2) 〈생략〉
- 3) 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구역 내의 지역인 경우 우리 선급은 두께계측의 범위를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개 정 사 항

표 1.2.10 액화가스 산적운반선의 정기검사 시 정밀검사 최소범위

제1차 정기검사	제2차 정기검사	제3차 및 이후 정기검사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비고)

- 1) ~ 2) 〈현행과 동일〉
- 3)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탱크 내의 지역인 경우 우리 선급은 정밀검사의 범위를 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할 수 있다. (2019)
- 4) 중앙횡단면이 일반적인 화물선과 유사하고 독립형탱크 형식C를 갖는 선박인 경우 우리 선급은 정밀검사의 범위를 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할 수 있다. (2019)
- 5) 검사대상탱크의 정비, 부식방지시스템 방식조치의 상태 및 다음의 경우를 고려하여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검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019) 〈이하 현행과 동일〉

표 1.2.11 액화가스 산적운반선의 정기검사 시 두께계측 최소범위

제1차 정기검사	제2차 정기검사	제3차 정기검사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비고)

- 1) 최소한 1개의 횡단면은 중앙부 0.5 L 내의 평형수탱크(있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
- 2) 〈현행과 동일〉
- 3)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구역 내의 지역인 경우 우리 선급은 두께계측의 범위를 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할 수 있다. (2019) 〈이하 현행과 동일〉

현 행	개 정 사 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p> <p>101. 적용 <생략></p> <p>102. 검사준비</p> <p>1. 검사계획서(survey programme)</p> <p>(1) <생략></p> <p>(2) 검사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검사하여야 할 화물창/화물탱크, 탱크, 지역 및 구조부재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협의하여야 한다.</p> <p>(가) 산적화물선 및 이중선체 산적화물선</p> <p>(a) ~ (e)</p> <p>(f) 신조 당시 <u>방식조치 사항</u>에 대한 자료</p> <p>(g) 운항 중 본선의 유지보수에 관한 자료</p> <p>(나) 유조선, 케미컬탱커 및 이중선체 유조선</p> <p>(a) ~ (i)</p> <p>(j) 해당되는 경우 <u>도장 및 방식조치</u>의 명세 및 기록</p> <p>(k) 일반적인 구조적 결함, 탱크경계 및 관의 누설과 해당되는 경우 <u>도장 및 방식조치</u>의 상태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선박소유자 검사기록</p> <p><생략></p> <p>(3) 검사계획서에는 다음 자료들을 첨부하여야 한다.</p> <p>(가) 산적화물선 및 이중선체 산적화물선 <생략></p> <p>(나) 유조선, 케미컬탱커 및 이중선체 유조선</p> <p>(a) ~ (c) <생략></p> <p>(d) 탱크 목록(용도, <u>도장 및 방식조치</u>의 범위와 도장상태 포함)</p> <p><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p> <p>101. 적용 <현행과 동일></p> <p>102. 검사준비</p> <p>1. 검사계획서(survey programme)</p> <p>(1) <현행과 동일></p> <p>(2) 검사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검사하여야 할 화물창/화물탱크, 탱크, 지역 및 구조부재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협의하여야 한다.</p> <p>(가) 산적화물선 및 이중선체 산적화물선</p> <p>(a) ~ (e)</p> <p>(f) 신조 당시 <u>부식방지시스템 방식조치 사항</u>에 대한 자료 <u>(2019)</u></p> <p>(g) 운항 중 본선의 유지보수에 관한 자료</p> <p>(나) 유조선, 케미컬탱커 및 이중선체 유조선</p> <p>(a) ~ (i)</p> <p>(j) 해당되는 경우 <u>도장 및 부식방지시스템 방식조치</u>의 명세 및 기록 <u>(2019)</u></p> <p>(k) 일반적인 구조적 결함, 탱크경계 및 관의 누설과 해당되는 경우 <u>도장 및 부식방지시스템 방식조치</u>의 상태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선박소유자 검사기록 <u>(2019)</u></p> <p><현행과 동일></p> <p>(3) 검사계획서에는 다음 자료들을 첨부하여야 한다.</p> <p>(가) 산적화물선 및 이중선체 산적화물선 <현행과 동일></p> <p>(나) 유조선, 케미컬탱커 및 이중선체 유조선</p> <p>(a) ~ (c) <현행과 동일></p> <p>(d) 탱크 목록(용도, <u>도장 및 부식방지시스템 방식조치</u>의 범위와 도장상태 포함) <u>(2019)</u></p> <p><이하 현행과 동일></p>

현행	개정사항
<p>103. 선내 비치서류(documentation on board)</p> <p>1. ~ 2. <생략></p> <p>3. 기타 서류(supporting documents)</p> <p>(1) 선내에는 다음의 자료들을 비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 (라) <생략></p> <p>(마) 다음 사항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검사기록부 【지침 참조】</p> <p>(a) 일반적인 구조결함 (b) 격벽 및 관장치의 누설 (c) 있는 경우 <u>방식조치</u>의 상태 <이하 생략></p>	<p>103. 선내 비치서류(documentation on board)</p> <p>1. ~ 2. <현행과 동일></p> <p>3. 기타 서류(supporting documents)</p> <p>(1) 선내에는 다음의 자료들을 비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 (라) <현행과 동일></p> <p>(마) 다음 사항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검사기록부 【지침 참조】</p> <p>(a) 일반적인 구조결함 (b) 격벽 및 관장치의 누설 (c) 있는 경우 <u>부식방지시스템 방식조치</u>의 상태 <u>(2019)</u> <이하 현행과 동일></p>

현 행

제 2 절 산적화물선

201. 일반 <생략>

202. 연차검사

1.~3. <생략>

4. 화물창 검사 【지침 참조】

연차검사 시기의 화물창에 대한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10년<선령≤15년 ^{2), 3)}	15년<선령 ^{2), 3)}
현상검사	모든 화물창	모든 화물창
정밀검사	<생략>	<생략>
기타	<생략>	<생략>
(비고) 1) ~ 2) <생략> 3) 화물창 내의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 정밀검사 및 두께측정의 범위를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203. 중간검사

1. <생략>

2. 평형수탱크 검사

중간검사 시기의 평형수탱크에 대한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5년<선령≤10년 ^{1), 2), 3)}	10년<선령≤15년	15년<선령
<생략>	<생략>	<생략>
(비고) 1) ~ 현상검사 시 육안으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u>방식조치</u> 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개정 사항

제 2 절 산적화물선

201. 일반 <현행과 동일>

202. 연차검사

1.~3. <현행과 동일>

4. 화물창 검사 【지침 참조】

연차검사 시기의 화물창에 대한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10년<선령≤15년 ^{2), 3)}	15년<선령 ^{2), 3)}
현상검사	모든 화물창	모든 화물창
정밀검사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기타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비고) 1) ~ 2) <현행과 동일> 3) 화물창 내의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 정밀검사 및 두께측정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 도강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u> 할 수 있다. (2019)		

203. 중간검사

1. <현행과 동일>

2. 평형수탱크 검사

중간검사 시기의 평형수탱크에 대한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5년<선령≤10년 ^{1), 2), 3)}	10년<선령≤15년	15년<선령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비고) 1) ~ 현상검사 시 육안으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u>부식방지시스템 방식조치</u> 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2019) <이하 현행과 동일>		

현 행				개 정 사 항			
3. 화물창 검사 중간검사 시기의 화물창에 대한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3. 화물창 검사 중간검사 시기의 화물창에 대한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5년<선령≤10년 ¹⁾	10년<선령≤15년	15년<선령		5년<선령≤10년 ¹⁾	10년<선령≤15년	15년<선령
현상 검사	모든 화물창	<생략>	<생략>	현상 검사	모든 화물창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정밀 검사	1. 화물창 : · 선수부 화물창 · 1 개의 다른 화물창(선측누골 중 충분한 범위(최소한 누골 25 % 이상)에 대하여, 누골과 상·하부 브래킷, 인접외판 및 횡격벽) 2. 전회 검사에서 식별된 의심지역	<생략>	<생략>	정밀 검사 (2019)	1. 화물창 : · 선수부 화물창 · 1 개의 다른 화물창 2. 범위 : · 선측누골 중 충분한 범위(최소한 누골 25 % 이상)에 대하여, 누골과 상·하부 브래킷, 인접 외판 및 횡격벽) 3. 전회 검사에서 식별된 의심지역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비고) 1)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화물창의 인접외판을 포함한 모든 선측누골과 나머지 모든 화물창에 대해서도 충분한 범위의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비고) 1)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화물창의 인접외판을 포함한 모든 선측누골과 나머지 모든 화물창에 대해서도 충분한 범위의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참조 : An overall survey of all cargo holds, including close-up survey of sufficient extent, minimum 25 % of frames , is to be carried out to establish the condition of: - Shell frames including their upper and lower end attachments, adjacent shell plating, and transverse bulkheads in the forward cargo hold and one other selected cargo hold ; - Areas found suspect at previous surveys. in accordance with 4.2.2.2 of IACS UR Z10.2.							

현행	개정사항
<p>4. 두께계측 범위</p> <p>(1) 선령이 5년을 넘고 10년 이하인 산적화물선은 다음에 따른다. (가) <생략> (나) 정밀검사 결과 구조적 결함이 없고 경화보호도장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검사원이 만족하는 경우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u></p> <p>(다) <생략> (라) 화물창 내의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 범위를 <u>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u></p> <p><생략></p> <p>204. 정기검사</p> <p>1. 일반</p> <p>(1) ~ (4) <생략> (5) <u>보이드스페이스로 개조된 평형수탱크의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은 평형수탱크의 요건에 따라 검사한다.</u> <생략></p> <p>2. 탱크 보호</p> <p>(1) 평형수탱크에 <u>방식조치가</u> 되어있는 경우 그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중저 평형수탱크를 제외하고 평형수탱크의 경화보호도장이 불량한 상태이나 재도장을 하지 않은 경우, 연화도장 또는 반경화도장을 한 경우, 또는 건조 시부터 경화보호도장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탱크는 매년 검사를 하여야 한다.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p> <p>(2) <생략> (3) 화물창에 경화보호도장이 되어있고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u></p> <p><생략></p>	<p>4. 두께계측 범위</p> <p>(1) 선령이 5년을 넘고 10년 이하인 산적화물선은 다음에 따른다. (가) <현행과 동일> (나) 정밀검사 결과 구조적 결함이 없고 경화보호도장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검사원이 만족하는 경우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할 수 있다. (2019)</u></p> <p>(다) <현행과 동일> (라) 화물창 내의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 범위를 <u>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할 수 있다. (2019)</u> <현행과 동일></p> <p>204. 정기검사</p> <p>1. 일반</p> <p>(1) ~ (4) <현행과 동일> (5) 보이드스페이스로 개조된 평형수탱크의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은 평형수탱크 요건에 따라 검사한다. <u>구역 내의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의 범위를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할 수 있다. (2019)</u> <현행과 동일></p> <p>2. 탱크 보호</p> <p>(1) 평형수탱크에 <u>부식방지시스템이 방식조치가</u> 되어있는 경우 그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 <u>(2019) 【지침 참조】</u></p> <p>(2) <현행과 동일> (3) 화물창에 경화보호도장이 되어있고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할 수 있다. (2019)</u> <현행과 동일></p>

현행	개정사항
<p>4.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 범위</p> <p>(1) ~ (2) <생략></p> <p>(3) 검사대상구역의 정비, <u>방식조치</u>의 상태 및 이용가능한 정보에 따라 유사한 구역이나 유사한 선박에 결함이 있는 구조적 배치 또는 상세를 가지는 경우를 고려하여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검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p> <p>(4)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구역 내의 지역인 경우 표 1.3.1에 따른 정밀검사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u>할 수 있다. (204.의 2항 (3)호 참조)</p> <p>5. 두께계측 범위</p> <p>(1) ~ (3) <생략></p> <p>(4)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탱크 내의 지역인 경우 표 1.3.2에 따른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u>할 수 있다. (204.의 2항 (3)호 참조)</p> <p>(5) <생략></p> <p>(6) 모든 화물창 및 평형수탱크 내의 선측늑골과 단부 브래킷의 전반적, 국부적 부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하여 대표적인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횡격벽판의 부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정밀검사 결과, 구조적 결함이 없고, 경화보호도장을 하였다면 도장상태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u>할 수 있다. 【지침 참조】</p> <p><생략></p>	<p>4.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 범위</p> <p>(1) ~ (2) <현행과 동일></p> <p>(3) 검사대상구역의 정비, <u>부식방지시스템 방식조치</u>의 상태 및 이용가능한 정보에 따라 유사한 구역이나 유사한 선박에 결함이 있는 구조적 배치 또는 상세를 가지는 경우를 고려하여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검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019)</p> <p>(4)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구역 내의 지역인 경우 표 1.3.1에 따른 정밀검사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u>할 수 있다. (204.의 2항 (3)호 참조) (2019)</p> <p>5. 두께계측 범위</p> <p>(1) ~ (3) <현행과 동일></p> <p>(4)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탱크 내의 지역인 경우 표 1.3.2에 따른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u>할 수 있다. (204.의 2항 (3)호 참조) (2019)</p> <p>(5) <현행과 동일></p> <p>(6) 모든 화물창 및 평형수탱크 내의 선측늑골과 단부 브래킷의 전반적, 국부적 부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하여 대표적인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횡격벽판의 부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정밀검사 결과, 구조적 결함이 없고, 경화보호도장을 하였다면 도장상태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u>할 수 있다. 【지침 참조】 (2019)</p> <p><현행과 동일></p>

현행	개정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유조선</p> <p>301. ~ 303. <생략></p> <p>304. 정기검사</p> <p>1. <생략></p> <p>2. 탱크 보호</p> <p>화물탱크에 <u>방식조치가</u> 되어있는 경우 그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 평형수탱크는 이후 매년 검사를 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 시부터 경화보호도장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 연화도장 또는 반경화도장을 한 경우 또는 - 탱크 내에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또는 -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 미만이나 검사원이 만족하는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 <p>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p> <p>【지침 참조】</p> <p>3.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 범위</p> <p>(1) ~ (2) <생략></p> <p>(3) 검사대상 탱크의 정비, <u>방식조치</u>의 상태 및 다음의 경우를 고려하여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검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p> <p>(가) ~ (나) <생략></p> <p>(4)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탱크 내의 지역인 경우 표 1.3.4에 따른 정밀검사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u>할 수 있다.</p> <p>4. 두께계측 범위</p> <p>(1) ~ (3) <생략></p> <p>(4)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탱크 내의 지역인 경우 표 1.3.5에 따른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u>할 수 있다.</p> <p><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유조선</p> <p>301. ~ 303. <현행과 동일></p> <p>304. 정기검사</p> <p>1. <현행과 동일></p> <p>2. 탱크 보호</p> <p>화물탱크에 <u>부식방지시스템이 방식조치가</u> 되어있는 경우 그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 평형수탱크는 이후 매년 검사를 하여야 한다. <u>(2019)</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 시부터 경화보호도장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 연화도장 또는 반경화도장을 한 경우 또는 - 탱크 내에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또는 -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 미만이나 검사원이 만족하는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 <p>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p> <p>【지침 참조】</p> <p>3.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 범위</p> <p>(1) ~ (2) <현행과 동일></p> <p>(3) 검사대상 탱크의 정비, <u>부식방지시스템 방식조치</u>의 상태 및 다음의 경우를 고려하여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검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u>(2019)</u></p> <p>(가) ~ (나) <현행과 동일></p> <p>(4)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탱크 내의 지역인 경우 표 1.3.4에 따른 정밀검사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 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u>할 수 있다. <u>(2019)</u></p> <p>4. 두께계측 범위</p> <p>(1) ~ (3) <현행과 동일></p> <p>(4)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탱크 내의 지역인 경우 표 1.3.5에 따른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 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u>할 수 있다. <u>(2019)</u> <현행과 동일></p>

현 행				개 정 사 항			
제 4 절 케미컬탱커				제 4 절 케미컬탱커			
401. ~ 402 <생략>				401. ~ 402 <현행과 동일>			
403. 중간검사				403. 중간검사			
1. ~ 2. <생략>				1. ~ 2. <현행과 동일>			
3. 검사범위				3. 검사범위			
중간검사 시기의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중간검사 시기의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5년 < 선령 ≤ 10년 ^{1), 2)}	10년 < 선령 ≤ 15년	15년 < 선령		5년 < 선령 ≤ 10년 ^{1), 2)}	10년 < 선령 ≤ 15년	15년 < 선령	
1. 대표적인 평형수탱크를 선정하여 현상검사	403.의 1항	403.의 1항 (4)호에		1. 대표적인 평형수탱크를 선정하여 현상검사	403.의 1항	403.의 1항 (4)호에	
2. 전회 검사 시에 식별된 의심지역에 대한 검사	(3)호에 따른다.	따른다.		2. 전회 검사 시에 식별된 의심지역에 대한 검사	(3)호에 따른다.	따른다.	
(비고)				(비고)			
1) 현상검사 시 육안으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u>보</u> <u>호도장</u> 이 양호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1) 현상검사 시 육안으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u>경</u> <u>화보호도장</u> 이 양호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u>(2019)</u>			
2) 다음의 경우 평형수탱크는 이후 매년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다음의 경우 평형수탱크는 이후 매년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동일>			

현행	개정사항
<p>404. 정기검사</p> <p>1. <생략></p> <p>2. 탱크 보호</p> <p>화물탱크에 <u>방식조치가</u> 되어있는 경우 그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 평형수탱크는 이후 매년 검사를 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 시부터 경화보호도장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 연화도장 또는 반경화도장을 한 경우 또는 - 탱크 내에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또는 -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 미만이나 검사원이 만족하는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 <p>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p> <p>【지침 참조】</p> <p>3.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 범위</p> <p>(1) ~ (2) <생략></p> <p>(3) 검사대상탱크의 정비, <u>방식조치</u>의 상태 및 다음의 경우를 고려하여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검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p> <p>(가) ~ (나) <생략></p> <p>(4)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탱크 내의 지역인 경우 표 1.3.7에 따른 정밀검사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u>할 수 있다.</p> <p>4. 두께계측 범위</p> <p>(1) ~ (3) <생략></p> <p>(4)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탱크 내의 지역인 경우 표 1.3.8에 따른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u>할 수 있다.</p> <p><이하 생략></p>	<p>404. 정기검사</p> <p>1. <현행과 동일></p> <p>2. 탱크 보호</p> <p>화물탱크에 <u>부식방지시스템이 방식조치가</u> 되어있는 경우 그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 평형수탱크는 이후 매년 검사를 하여야 한다. <u>(2019)</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 시부터 경화보호도장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 연화도장 또는 반경화도장을 한 경우 또는 - 탱크 내에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또는 -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 미만이나 검사원이 만족하는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 <p>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p> <p>【지침 참조】</p> <p>3.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 범위</p> <p>(1) ~ (2) <현행과 동일></p> <p>(3) 검사대상탱크의 정비, <u>부식방지시스템 방식조치</u>의 상태 및 다음의 경우를 고려하여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검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u>(2019)</u></p> <p>(가) ~ (나) <현행과 동일></p> <p>(4)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탱크 내의 지역인 경우 표 1.3.7에 따른 정밀검사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 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u>할 수 있다. <u>(2019)</u></p> <p>4. 두께계측 범위</p> <p>(1) ~ (3) <현행과 동일></p> <p>(4)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탱크 내의 지역인 경우 표 1.3.8에 따른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 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u>할 수 있다. <u>(2019)</u></p> <p><이하 현행과 동일></p>

현 행	개 정 사 항
제 5 절 이중선체 유조선	제 5 절 이중선체 유조선
<p>501. ~ 503. <생략></p> <p>504. 정기검사</p> <p>1.~2. <생략></p> <p>2. 탱크 보호</p> <p>화물탱크에 <u>방식조치가</u> 되어있는 경우 그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 평형수탱크는 이후 매년 검사를 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 시부터 경화보호도장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 연화도장 또는 반경화도장을 한 경우 또는 - 탱크 내에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또는 -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 미만이나 검사원이 만족하는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 <p>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p> <p>【지침 참조】</p> <p>3.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 범위</p> <p>(1) ~ (2) <생략></p> <p>(3) 검사대상탱크의 정비, <u>방식조치</u>의 상태 및 다음의 경우를 고려하여,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검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p> <p>(가) ~ (나) <생략></p> <p>(4)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탱크 내의 지역인 경우 표 1.3.10에 따른 정밀검사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u>할 수 있다.</p> <p>4. 두께계측 범위</p> <p>(1) ~ (3) <생략></p> <p>(4)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탱크 내의 지역인 경우 표 1.3.11에 따른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u>할 수 있다.</p> <p><이하 생략></p>	<p>501. ~ 503. <현행과 동일></p> <p>504. 정기검사</p> <p>1.~2. <현행과 동일></p> <p>2. 탱크 보호</p> <p>화물탱크에 <u>부식방지시스템이 방식조치가</u> 되어있는 경우 그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 평형수탱크는 이후 매년 검사를 하여야 한다. <u>(2019)</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 시부터 경화보호도장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 연화도장 또는 반경화도장을 한 경우 또는 - 탱크 내에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또는 -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 미만이나 검사원이 만족하는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 <p>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p> <p>【지침 참조】</p> <p>3.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 범위</p> <p>(1) ~ (2) <현행과 동일></p> <p>(3) 검사대상탱크의 정비, <u>부식방지시스템 방식조치</u>의 상태 및 다음의 경우를 고려하여,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검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p> <p>(가) ~ (나) <현행과 동일></p> <p>(4)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탱크 내의 지역인 경우 표 1.3.10에 따른 정밀검사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 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u>할 수 있다. <u>(2019)</u></p> <p>4. 두께계측 범위</p> <p>(1) ~ (3) <현행과 동일></p> <p>(4)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탱크 내의 지역인 경우 표 1.3.11에 따른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 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u>할 수 있다. <u>(2019)</u> <이하 현행과 동일></p>

현 행				개 정 사 항
제 6 절 이중선체 산적화물선				제 6 절 이중선체 산적화물선
601. ~ 602. <생략>				601. ~ 602. <현행과 동일>
603. 중간검사				603. 중간검사
1. <생략>				1. <현행과 동일>
2. 평형수탱크 검사				2. 평형수탱크 검사
중간검사 시기의 평형수탱크에 대한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중간검사 시기의 평형수탱크에 대한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5년<선령≤10년 ^{1), 2), 3)}	10년<선령≤15년	15년<선령		
1. 대표적인 평형수탱크를 선정하여 현상검사	603.의 1항 (3)호에 따른다.	603.의 1항 (4)호에 따른다.		
2. 전회 정기검사 시에 식별된 의심지역 에 대한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				
(비고)				
1) ~ 현상검사 시 육안으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u>방식조치</u> 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2) 평형수탱크의 도장이 불량한 상태, 부식이나 기타 결함이 발견된 경우, 또 는 건조 시부터 <u>보호도장</u> 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같은 형식의 다른 평형수탱크까지 확대하여 검사한다.				
3) <생략>				
4. 두께계측 범위				4. 두께계측 범위
(1) 선령이 5년을 넘고 10년 이하인 이중선체 산적화물선은 다음에 따른다.				(1) 선령이 5년을 넘고 10년 이하인 이중선체 산적화물선은 다음에 따른다.
(가) <생략>				(가) <현행과 동일>
(나) 정밀검사 결과 구조적 결함이 없고 경화보호도장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검사원이 만족하는 경우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 히 고려</u> 할 수 있다.				(나) 정밀검사 결과 구조적 결함이 없고 경화보호도장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검사원이 만족하는 경우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 히 고려</u> <u>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u> 할 수 있다. <u>(2019)</u>
(다) <생략>				(다) <현행과 동일>
(라) 화물창 내의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 범위를 <u>특별히 고려</u> 할 수 있다.				(라) 화물창 내의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 범위를 <u>특별히 고려</u> <u>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 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u> 할 수 있다. <u>(2019)</u> <이하 현행과 동일>
<이하 생략>				

현행	개정사항
<p>604. 정기검사</p> <p>1. 일반</p> <p>(1) ~ (4) <생략></p> <p>(5) <u>보이드스페이스로 개조된 평형수탱크의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은 평형수탱크 요건에 따라 검사한다. (2017)</u></p> <p><생략></p> <p>2. 탱크 보호</p> <p>(1) 평형수탱크에 <u>방식조치가</u> 되어있는 경우 그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p> <p>(2) <생략></p> <p>(3) 화물창에 <u>경화보호도장이</u> 되어있고 <u>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의 범위를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u></p> <p>3. 창구덮개 및 코밍 <생략></p> <p>4.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 범위</p> <p>(1) ~ (2) <생략></p> <p>(3) 검사대상구역의 정비, <u>방식조치의 상태 및 이용가능한 정보에 따라 유사한 구역이나 유사한 선박에 결함이 있는 구조적 배치 또는 상세를 가지는 경우를 고려하여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검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u></p> <p>(4) <u>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구역 내의 지역인 경우 표 1.3.13에 따른 정밀검사의 범위를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604.의 2항 (3)호 참조)</u></p>	<p>604. 정기검사</p> <p>1. 일반</p> <p>(1) ~ (4) <현행과 동일></p> <p>(5) <u>보이드스페이스로 개조된 평형수탱크의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은 평형수탱크 요건에 따라 검사한다. 구역 내의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의 범위를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할 수 있다. (2019)</u></p> <p><현행과 동일></p> <p>2. 탱크 보호</p> <p>(1) 평형수탱크에 <u>부식방지시스템이 방식조치가</u> 되어있는 경우 그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 (2019)</p> <p>(2) <현행과 동일></p> <p>(3) 화물창에 <u>경화보호도장이</u> 되어있고 <u>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 정밀검사 및 두께계측의 범위를 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할 수 있다. (2019)</u></p> <p>3. 창구덮개 및 코밍 <현행과 동일></p> <p>4.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 범위</p> <p>(1) ~ (2) <현행과 동일></p> <p>(3) 검사대상구역의 정비, <u>부식방지시스템 방식조치의 상태 및 이용가능한 정보에 따라 유사한 구역이나 유사한 선박에 결함이 있는 구조적 배치 또는 상세를 가지는 경우를 고려하여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검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019)</u></p> <p>(4) <u>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구역 내의 지역인 경우 표 1.3.13에 따른 정밀검사의 범위를 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할 수 있다. (604.의 2항 (3)호 참조) (2019)</u></p>

현행	개정사항
<p>5. 두께계측 범위</p> <p>(1) ~ (3) <생략></p> <p>(4)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탱크 내의 지역인 경우 표 1.3.14에 따른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u>할 수 있다. (604.의 2항 (3)호 참조)</p> <p>(5) <생략></p> <p>(6) ~ 정밀검사 결과, 구조적 결함이 없고, 경화보호도장을 하였다면 도장상태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u>할 수 있다. 【지침 참조】</p> <p><이하 생략></p>	<p>5. 두께계측 범위</p> <p>(1) ~ (3) <현행과 동일></p> <p>(4)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탱크 내의 지역인 경우 표 1.3.14에 따른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u>할 수 있다. (604.의 2항 (3)호 참조) <u>(2019)</u></p> <p>(5) <현행과 동일></p> <p>(6) ~ 정밀검사 결과, 구조적 결함이 없고, 경화보호도장을 하였다면 도장상태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두께계측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u>할 수 있다. 【지침 참조】 <u>(2019)</u></p> <p><이하 현행과 동일></p>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개정사항

(제 1편 선급등록 및 검사)



- 주 요 개 정 내 용 -

- (1) 2018.11.01일자 시행사항 (우리선급은 이를 인지 된 때로부터 및 소급적용)
 - 탈급요건 추가
 -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승인된 제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기구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공표(또는 공지)된 선박

- (2) 2019.01.01, 03.02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IACS UR Z10.1/Z10.2/Z10.4/Z10.5(Rev.23/35/15/18 Jan 2018) 개정사항 반영
 - 부록 1-11의 전문공급자 승인 지침 삭제 후 새로운 지침으로 별책화 예정(2019.1.1)
 - 선급기술규칙 제개정에 따른 선급부호 추가 및 삭제

- (3) 2019.07.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검사시작일 및 프로그램 승인일 기준)
 - IACS UR Z10.2(Rev. 33, 34, 35 Corr.1 Sep 2018)의 개정사항 반영
 - 선회식 추진장치에 대한 프로펠러 축검사 요건
(여수광양지부 제개정 요청(YSU6100-795-2018))
 - 기관장치의 계속검사
(난징지부 제개정 요청(NAJ6100-254- 18))
 - 내부고객(검사업무팀, 탱커팀, 화물선팀, 고객지원팀)의 개정요청서 반영

- CM 요건 개정 및 CBM(condition based maintenance) 요건 추가
 - PMS 요건에서 CM에 대한 항목을 삭제함. (지침 9절 및 부록 1-8의 1항 및 2항)
(IACS UR Z20 Rev.1 반영), (검사시작(commence)일 기준)
 - CM 요건 개정 및 CBM(condition based maintenance) 요건 추가 (부록 1-8의 3항)
(IACS UR Z27 New 및 IACS UR Z18 Rev.8 반영), (프로그램 승인일 기준)
- 특별히 고려 의미 명확화 및 방식조치와 부식방지시스템의 용어 통일
- 기타 규칙적용시 발견된 불합리한 요건에 대한 개정

(1) 2018.11.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현 행	개 정 사 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 제 8절 <omitted></p> <p style="text-align: center;">제 9 절 선급정지, 탈급 및 재등록</p> <p>901. 선급정지 및 회복 [규칙 참조]</p> <p>규칙 901.의 1항 및 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급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검사는 그 검사를 시행하는 시기의 선령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지난 원래 검사지정일의 검사요건에 기초하여야 한다.</p> <p>902. 탈급 (2018) [규칙 참조]</p> <p>1. 우리 선급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선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선박을 선급정지 또는 탈급시킬 수 있다.</p> <p>(1) 항만국통제(PSC) 검사에서 심각한 결함사항으로 인하여 출항정지된 선박</p> <p>(2) 기국으로부터 협약증서가 회수된 선박 또는 별 사유 없이 무국적 상태로 운항하는 선박</p> <p><u><새롭게 추가></u></p> <p>2. 장기간 조업 중인 어선의 경우, 검사계획서 및 조업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할 시, 선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선박의 탈급을 유예시킬 수 있다. (2018)</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 제 8절 <현행과 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9 절 선급정지, 탈급 및 재등록</p> <p>901. 선급정지 및 회복 [규칙 참조]</p> <p>규칙 901.의 1항 및 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급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검사는 그 검사를 시행하는 시기의 선령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지난 원래 검사지정일의 검사요건에 기초하여야 한다.</p> <p>902. 탈급 (2018) [규칙 참조]</p> <p>1. 우리 선급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선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선박을 선급정지 또는 탈급시킬 수 있다.</p> <p>(1) 항만국통제(PSC) 검사에서 심각한 결함사항으로 인하여 출항정지된 선박</p> <p>(2) 기국으로부터 협약증서가 회수된 선박 또는 별 사유 없이 무국적 상태로 운항하는 선박</p> <p><u>(3)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승인된 제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기구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공표(또는 공지)된 선박. (2018)</u></p> <p>2. 장기간 조업 중인 어선의 경우, 검사계획서 및 조업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할 시, 선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선박의 탈급을 유예시킬 수 있다. (2018)</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현행과 동일></p>

(2) 2019.01.01/03.02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현 행	개 정 사 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선급등록</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 6절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절 선박소유자의 협력의무</p> <p>702. 검사협력 [규칙 참조] 규칙 702.의 4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u>지침 부록 1-11</u>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선급등록</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 6절 <현행과 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절 선박소유자의 협력의무</p> <p>702. 검사협력 [규칙 참조] 규칙 702.의 4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전문공급자 승인 지침 자침 부록 1-11을 말한다. <i>(2019)</i></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현행과 동일></p>

현 행

**부록 1-1 선급부호의 선종, 특기사항, 추가설비부호의
부기상세 및 기재요령**

1. 선급부호
1.1 선종 및 특기사항

(비고) ⁽³⁵⁾ : 다음의 추가특기사항은 해당 규정에 적합한 경우 부기한다. 추가특기사항은 선체사항인지 기관사항인지에 관계없이 선체부호 아래 특기사항 다음의 위치에 부기한다.

추가특기사항 (2018)	적용규정
NVH-V1, NVH-V2, NVH-V3 (2017)	〈생략〉
<u>CSMS1.</u> <u>CSMS2.</u> <u>CSMS3.</u> <u>CSMS1(C).</u> <u>CSMS2(C).</u> <u>CSMS3(C).</u> (2018)	해상 사이버보안 관리 시스템 지침에서 규정하는 해상 사이버보안 관리 시스템을 갖춘 선박
	〈추가〉
	〈추가〉

개 정 사 항

**부록 1-1 선급부호의 선종, 특기사항, 추가설비부호의
부기상세 및 기재요령**

1. 선급부호
1.1 선종 및 특기사항

(비고) ⁽³⁵⁾ : 다음의 추가특기사항은 해당 규정에 적합한 경우 부기한다. 추가특기사항은 선체사항인지 기관사항인지에 관계없이 선체부호 아래 특기사항 다음의 위치에 부기한다.

추가특기사항 (2018)	적용규정
NVH-V1, NVH-V2, NVH-V3 (2017)	〈현행과 동일〉
<u>CS1.</u> <u>CS2.</u> <u>CS3.</u> <u>CS1(C).</u> <u>CS2(C).</u> <u>CS3(C).</u> (2019)	해상 사이버보안 관리 시스템 지침에서 규정하는 해상 사이버보안 관리 시스템을 <u>운용하는</u> 선박
<u>CS READY</u> (2019)	해상 사이버보안 관리 시스템 지침에서 규정하는 해상 사이버보안 관리 시스템을 갖춘 선박
<u>AL1.</u> <u>AL2.</u> <u>AL3.</u> <u>AL4.</u> <u>AL5</u> (2019)	자율운항선박 지침에서 규정하는 자율화시스템을 갖춘 선박

현 행

부록 1-3 검사계획서 및 검사계획질의서 작성 예 <생략>

표 1 검사계획서 작성 예

SURVEY PROGRAMME

For Special Survey No. / Intermediate Survey at _____ years of age,
scheduled from _____ to _____
at _____

(If the commencement-completion survey system is applied, outlines of
each survey are to be listed in the next page)

Basic information and particulars

Name of ship :	
Class No. :	IMO No. :
Class Notation :	
Flag State :	
Port of registry :	
Gross tonnage :	
Deadweight(metric tones) :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m) :	
Shipbuilder :	
Hull number :	
Date of delivery of the ship :	
Date of build / major conversion : /	
Owner :	
Thickness measurement company :	

Prepared by the Owner in co-operation with the Society;

Owner's representative :	Classification Society :
Signature	Signature
_____	_____
Name	Name
(Place / Date)	(Place / Date)

<이하 생략>

개 정 사 항

부록 1-3 검사계획서 및 검사계획질의서 작성 예 <현행과 동일>

표 1 검사계획서 작성 예

SURVEY PROGRAMME

For Special Survey No. / Intermediate Survey at _____ years of age,
scheduled from _____ to _____
at _____

(If the commencement-completion survey system is applied, outlines of
each survey are to be listed in the next page)

Basic information and particulars

Name of ship :	
Class No. :	IMO No. :
Class Notation :	
Flag State :	
Port of registry :	
Gross tonnage :	
Deadweight(metric tones) :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m) :	
Shipbuilder :	
Hull number :	
Date of delivery of the ship :	
Date of build / major conversion : /	
Owner :	
Thickness measurement <i>company firm (2019)</i> :	

Prepared by the Owner in co-operation with the Society;

Owner's representative :	Classification Society :
Signature	Signature
_____	_____
Name	Name
(Place / Date)	(Place / Date)

<이하 현행과 동일>

현 행	개 정 사 항
<p>11. Thickness measurement <u>company</u></p> <p>This section of the survey programme is to identify changes, if any, relating to the information on the thickness measurement <u>company</u> provided in the survey planning questionnaire.</p>	<p>11. Thickness measurement <u>company firm (2019)</u></p> <p>This section of the survey programme is to identify changes, if any, relating to the information on the thickness measurement <u>company firm</u> provided in the survey planning questionnaire.</p>

현 행

표 2 검사계획서질의서 작성 예

SURVEY PLANNING QUESTIONNAIRE

The following information will enable the Owner in co-operation with the Society to develop a survey programme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Rules. It is essential that the Owner provides, when completing the present questionnaire, up-to-date information. The present questionnaire, when completed, is to provide all information and material required by the Rules.

Basic information and particulars

Name of ship :	
Class No. :	IMO No. :
Class Notation :	
Flag State :	
Port of registry :	
Gross tonnage :	
Deadweight(metric tones) :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m) :	
Shipbuilder :	
Hull number :	
Date of delivery of the ship :	
Date of build / major conversion : /	
Owner :	
Thickness measurement company :	

Owner's representative :
Signature

Name
(Place / Date)

<이하 생략>

개 정 사 항

표 2 검사계획서질의서 작성 예

SURVEY PLANNING QUESTIONNAIRE

The following information will enable the Owner in co-operation with the Society to develop a survey programme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Rules. It is essential that the Owner provides, when completing the present questionnaire, up-to-date information. The present questionnaire, when completed, is to provide all information and material required by the Rules.

Basic information and particulars *(2019)*

Name of ship :	
Class No. :	IMO No. :
Class Notation :	
Flag State :	
Port of registry :	
Gross tonnage :	
Deadweight(metric tones) :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m) :	
Shipbuilder :	
Hull number :	
Date of delivery of the ship :	
Date of build / major conversion : /	
Owner :	
Thickness measurement <i>company firm</i> :	

Owner's representative :
Signature

Name
(Place / Date)

<이하 현행과 동일>

현행	개정사항																								
<p>5. Name and address of the approved thickness measurement <u>company</u></p>	<p>5. Name and address of the approved thickness measurement <u>company firm (2019)</u></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273 379 481 454">Name</th> <th data-bbox="481 379 772 454">Address</th> <th data-bbox="772 379 1117 454">Approved by</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Name	Address	Approved by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1117 379 1326 454">Name</th> <th data-bbox="1326 379 1617 454">Address</th> <th data-bbox="1617 379 1960 454">Approved by</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Name	Address	Approved by									
Name	Address	Approved by																							
Name	Address	Approved by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현행과 동일></p>																								

현 행

표 19 일반요목

GENERAL PARTICULARS

Ship's name :
 IMO Number :
 Class Identification number :
 Port of registry :
 Gross tons :
 Deadweight :
 Date of build :
 Classification society :

Name of Company performing thickness measurement :
 Thickness measurement company certified by :
 Certificate No. :
 Certificate valid from to
 Place of measurement :
 First date of measurement :
 Last date of measurement :
 Special survey/intermediate survey due :*
 Details of measurement equipment :
 Qualification of operator :

Report Number : consisting of Sheets

Name of operator : Name of surveyor :
 Signature of operator : Signature of surveyor :
Company official stamp : Classification Society
 Official Stamp :

* Delete as appropriate

개 정 사 항

표 19 일반요목

GENERAL PARTICULARS *(2019)*

Ship's name :
 IMO Number :
 Class Identification number :
 Port of registry :
 Gross tons :
 Deadweight :
 Date of build :
 Classification society :

Name of Company firm performing thickness measurement :
 Thickness measurement company firm certified by :
 Certificate No. :
 Certificate valid from to
 Place of measurement :
 First date of measurement :
 Last date of measurement :
 Special survey/intermediate survey due :*
 Details of measurement equipment :
 Qualification of operator :

Report Number : consisting of Sheets

Name of operator : Name of surveyor :
 Signature of operator : Signature of surveyor :
Company Firm official stamp : Classification Society
 Official Stamp :

* Delete as appropriate

현행	개정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부록 1-11 전문공급자 승인지침</p> <p>1. 일반사항 <u>우리 선급은 계측, 시험 또는 안전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정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이 요건 및 관련된 부록 1-11-1의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u></p> <p>2. ~ 8. <생략></p> <p>9. 기존의 승인 <u>이 부록 1-11의 시행일자 전에 우리 선급에 의하여 인증된 각 분류의 전문공급자에 대한 승인은 해당 승인증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그러나 3년을 넘지 않는 기간까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증서의 갱신은 이 부록 1-11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록 1-11-1 다양한 분류의 전문공급자별 특정요건</p> <p>1. 선박에 대한 두께계측에 종사하는 회사 <u><이하 생략></u></p> <p>8. 원격검사기술(RIT)을 이용하여 검사에 종사하는 회사 (2017) <u><이하 생략></u></p> <p>9. 기타 서비스회사 (2017) <u>1항부터 8.항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공급자로서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u></p>	<p style="text-align: center;">부록 1-11 전문공급자 승인지침</p> <p>1. 일반사항 —우리 선급은 계측, 시험 또는 안전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정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이 요건 및 관련된 부록 1-11-1의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p> <p>2. ~ 8. <생략></p> <p>9. 기존의 승인 이 부록 1-11의 시행일자 전에 우리 선급에 의하여 인증된 각 분류의 전문공급자에 대한 승인은 해당 승인증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그러나 3년을 넘지 않는 기간까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증서의 갱신은 이 부록 1-11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록 1-11-1 다양한 분류의 전문공급자별 특정요건</p> <p>1. 선박에 대한 두께계측에 종사하는 회사 <이하 생략></p> <p>8. 원격검사기술(RIT)을 이용하여 검사에 종사하는 회사 (2017) <이하 생략></p> <p>9. 기타 서비스회사 (2017) 1항부터 8.항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공급자로서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3) 2019.07.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검사시작일, 프로그램 승인일 기준)

현행	개정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선급등록</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 제 7 절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절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p> <p>801. 검사원의 권한 [규칙 참조]</p> <p>1. ~ 2. <생략></p> <p>3. 두께계측의 요구</p> <p>검사원은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께계측을 요구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p> <p>(1) 쇠모된 또는 쇠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p> <p>(2) 쇠모의 진행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p>(3) <u>보호도장</u>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도막의 탈락 등 <u>보호도장상태</u>에 이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p> <p>(4) 전 1항 (1)호부터 (5)호에 규정된 사항</p> <p>4. 압력시험의 요구 <생략></p> <p>5. 정밀검사의 요구</p> <p>검사원은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검사를 요구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p> <p>(1) 현상검사 결과 과도한 부식 또는 구조적 결함 등 이상상태가 감지된 경우</p> <p>(2) 해당구역의 정비 및 <u>방식조치</u>의 상태</p> <p>(3) 전 1항 (1)호부터 (5)호에 규정된 사항</p> <p><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선급등록</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 제 7 절 <현행과 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절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p> <p>801. 검사원의 권한 [규칙 참조]</p> <p>1. ~ 2. <현행과 동일></p> <p>3. 두께계측의 요구</p> <p>검사원은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께계측을 요구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p> <p>(1) 쇠모된 또는 쇠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p> <p>(2) 쇠모의 진행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p>(3) <u>경화보호도장</u>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도막의 탈락 등 <u>경화보호도장</u>상태에 이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2019)</p> <p>(4) 전 1항 (1)호부터 (5)호에 규정된 사항</p> <p>4. 압력시험의 요구 <현행과 동일></p> <p>5. 정밀검사의 요구</p> <p>검사원은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검사를 요구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p> <p>(1) 현상검사 결과 과도한 부식 또는 구조적 결함 등 이상상태가 감지된 경우</p> <p>(2) 해당구역의 정비 및 <u>부식방지시스템</u> <u>방식조치</u>의 상태 (2019)</p> <p>(3) 전 1항 (1)호부터 (5)호에 규정된 사항</p> <p><이하 현행과 동일></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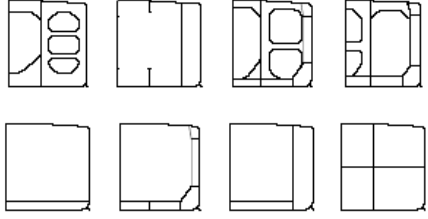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사 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산적화물선</p> <p>201. 일반 <생략></p> <p>202. 연차검사</p> <p>1. ~ 5. <생략></p> <p>6. 규칙 202.의 6항 (2)호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는 다음을 말한다. [규칙 참조]</p> <p>(1) 일반</p> <p>(가) ~ (다) <생략></p> <p>(라) 특별고려</p> <p>(a) 최전방 화물창 내의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 정밀검사 및 두께측정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u>할 수 있다.</p> <p>비고 : 현존 산적화물선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화물창을 도장 또는 재도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정밀검사 및 두께측정의 범위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다. 화물창의 도장에 앞서 부재치수에 대하여는 검사원 입회 하에 확인하여야 한다.</p> <p><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일반사항 <현행과 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산적화물선</p> <p>201. 일반 <현행과 동일></p> <p>202. 연차검사</p> <p>1. ~ 5. <현행과 동일></p> <p>6. 규칙 202.의 6항 (2)호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는 다음을 말한다. [규칙 참조]</p> <p>(1) 일반</p> <p>(가) ~ (다) <현행과 동일></p> <p>(라) 특별고려</p> <p>(a) 최전방 화물창 내의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 정밀검사 및 두께측정의 범위를 <u>특별히 고려</u> <u>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u>할 수 있다. (2019)</p> <p>비고 : 현존 산적화물선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화물창을 도장 또는 재도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정밀검사 및 두께측정의 범위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다. 화물창의 도장에 앞서 부재치수에 대하여는 검사원 입회 하에 확인하여야 한다.</p> <p><이하 현행과 동일></p>

현 행

부록 1-1 선급부호의 선종, 특기사항, 추가설비부호의 부기상세 및 기재요령

1. 선급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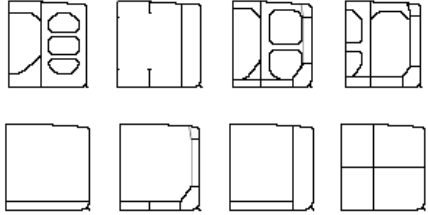
1.1 선종 및 특기사항

선종	특기사항	비고
1. Oil Tanker ⁽²⁻⁰⁾ (D o u b l e Hull) ⁽²⁻²⁾ (FAC) ⁽¹⁾ (FAO) ⁽¹⁾ (FBC) ⁽¹⁾ (CSR) ⁽²⁻⁴⁾	Crude Product Crude/Product Product/Asphalt Asphalt Asphalt ⁽²⁻³⁾	<p>(1) : 선종 중 1, 3, 4, 8, 9 및 18란에서의 FA, FB, FAC, FAO 및 FBC의 의미는 각각 다음과 같다.</p> <p style="margin-left: 20px;">FA : Flash point above 60°C FB : Flash point of 60°C and below FAC : FA with controlled tank vents FAO : FA with open tank vents FBC : FB with controlled tank vents</p> <p>(2-0) : 2.0의 기재요령 참조</p> <p>(2-1) : 일반적으로 일체형탱크를 가지고 주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된 선박으로 중간갑판과 같은 특이한 구조적배치를 가지는 경우를 포함하여 단일 및 이중선체구조의 탱커에 부기한다.(그림 1 참조)</p> <p>주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I 제19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Oil Tanker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I 제20규칙 및/또는 제21규칙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퇴출될 것을 요구하는 국제 및/또는 국내 법규에 따라야 할 수 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1 Oil Tanker 'ESP'의 중앙횡단면 예</p> <p>(2-2) : 주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된 선박으로 화물탱크가 화물지역의 전 길이에 걸쳐 보이드스페이스용 또는 평형수용의 이중선체 및 이중저로 구성된 이중선체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박에 부기한다.</p> <p>(2-3) : 모든 화물탱크가 독립형탱크인 경우에 부기하며 규칙 1편의 적용 시 유조선 및 이중선체 유조선에 대한 부가적 요건(ESP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2-4) : 규칙 12편 또는 규칙 13편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에 부기한다.</p>

개 정 사 항

부록 1-1 선급부호의 선종, 특기사항, 추가설비부호의 부기상세 및 기재요령

1. 선급부호 1.1 선종 및 특기사항

선종	특기사항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ESP'⁽²⁻¹⁾</p> <p>1. Oil Tanker⁽²⁻⁰⁾ (2019) (Double Hull)⁽²⁻²⁾ (Double Hull) (EXP)⁽²⁻³⁾ (FAC)⁽¹⁾ (FAO)⁽¹⁾ (FBC)⁽¹⁾ (CSR)⁽²⁻⁵⁾</p>	<p>Crude Product Crude/Product Product/Asphalt Asphalt</p> <p>Asphalt⁽²⁻⁴⁾</p>	<p><현행과 동일></p> <p>(2-1) : 일반적으로 일체형탱크를 가지고 주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된 선박으로 중간갑판과 같은 특이한 구조적배치를 가지는 경우를 포함하여 단일 및 이중선체구조의 탱커에 부기한다.(그림 1 참조)</p> <p>주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I 제19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Oil Tanker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I 제20규칙 및/또는 제21규칙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퇴출될 것을 요구하는 국제 및/또는 국내 법규에 따라야 할 수 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1 Oil Tanker 'ESP'의 중앙횡단면 예</p> <p>(2-2) : 주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된 선박으로 화물탱크가 화물지역의 전 길이에 걸쳐 보이드스페이스용 또는 평형수용의 이중선체 및 이중저로 구성된 이중선체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박에 부기한다. 추가하여 이중선체의 배치는 적용지침 7편 10장 102.1.에 따른다. (2019)</p> <p>(2-3) : (2-2)에 해당되지 않는 선박으로서, 주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된 선박으로 화물탱크가 화물지역의 전 길이에 걸쳐 보이드스페이스용 또는 평형수용의 이중선체 및 이중저로 구성된 이중선체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박에 부기한다. (2019)</p> <p>(2-4) : 모든 화물탱크가 독립형탱크인 경우에 부기하며 규칙 1편의 적용 시 유조선 및 이중선체 유조선에 대한 부가적 요건(ESP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p> <p>(2-5) : 규칙 12편 또는 규칙 13편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에 부기한다. (2019)</p>

현 행

2. ~ 5 <생략>

선종	특기사항	비고
6. Cargo Ship (2017)	- HC ⁽¹²⁾ General Dry Cargo ⁽¹⁵⁻¹⁾ Wood Chip Carrier ⁽¹⁵⁻²⁾ Cement Carrier ⁽¹⁵⁻³⁾ Livestock Carrier ⁽¹⁵⁻⁴⁾ Deck Cargo Ship ⁽¹⁵⁻⁵⁾ General Dry Cargo(Double Skin) ⁽¹⁵⁻⁶⁾ Liquid Cargo(Category OS only) ⁽¹⁵⁻⁷⁾ <newly added>	¹⁵⁻¹⁾ : 자항으로 고체화물을 운송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모든 일반건화물선에 부기하며, 규칙 1편 2장 14절 의 일반건화물선에 대한 부가적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선박은 적용을 제외한다. -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 산적화물선 및 이중선체 산적화물선 - 컨테이너전용운반선 - 로로운반선 - 냉동운반선 - 우드칩전용운반선(우드칩을 전용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선박) ⁽¹⁵⁻²⁾ - 시멘트전용운반선(시멘트를 전용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선박) ⁽¹⁵⁻³⁾ - 가축운반선(가축을 운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선박) ⁽¹⁵⁻⁴⁾ - 갑판화물선(갑판 상부에만 화물을 적재하도록 설계된 선박) ⁽¹⁵⁻⁵⁾ - 상갑판까지 화물창의 전 높이 및 화물지역의 전 길이에 걸쳐 연장된 이중선체를 가지는 이중선체구조의 일반건화물선 ⁽¹⁵⁻⁶⁾ ⁽¹⁵⁻⁷⁾ : 규칙 7편 6장 18절 에 규정된 IBC Code의 적용을 받지 않는 Category OS로 분류된 액체화물만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에 부기한다.
7.~10. <생략>	<생략>	<생략>
11. Container Ship ⁽²⁰⁾	LS ⁽²⁰⁻¹⁾ LS(CL) ⁽²⁰⁻²⁾ LS(CL, RS) ⁽²⁰⁻³⁾ <새롭게 추가>	⁽²⁰⁾ : Container만을 전용으로 운송하도록 계획된 선박에 부기한다. ⁽²⁰⁻¹⁾ : 지침 7편 부록 7-2 에 따라 설계 및 제작된 컨테이너 고박설비가 설치된 선박에 부기한다. ⁽²⁰⁻²⁾ : 상기 ⁽²⁰⁻¹⁾ 에 추가하여, 지침 7편 부록 7-2 에 따라 우리 선급에 의하여 승인된 고박강도계산프로그램이 설치 및 유지되는 선박에 부기한다. ⁽²⁰⁻³⁾ : 상기 ⁽²⁰⁻²⁾ 에 추가하여, 지침 7편 부록 7-2 에 따라 화물고박지침서에 우리 선급에서 제공한 항로별 경감계수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설치된 고박강도계산프로그램에 항로별 경감계수가 반영된 선박에 부기한다.

개정 사항

2. ~ 5 <현행과 동일>

선종	특기사항	비고
6. Cargo Ship (2017)	- HC ⁽¹²⁾ General Dry Cargo ⁽¹⁵⁻¹⁾ Wood Chip Carrier ⁽¹⁵⁻²⁾ Cement Carrier ⁽¹⁵⁻³⁾ Livestock Carrier ⁽¹⁵⁻⁴⁾ Deck Cargo Ship ⁽¹⁵⁻⁵⁾ General Dry Cargo(Double Skin) ⁽¹⁵⁻⁶⁾ Liquid Cargo(Category OS only) ⁽¹⁵⁻⁷⁾ Container⁽¹⁵⁻⁸⁾ (2019)	¹⁵⁻¹⁾ : 자항으로 고체 화물을 운송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모든 일반건화물선에 부기하며, 규칙 1편 2장 14절 의 일반건화물선에 대한 부가적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선박은 적용을 제외한다. -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 산적화물선 및 이중선체 산적화물선 - 컨테이너전용운반선 - 로로운반선 - 냉동운반선 - 우드칩전용운반선(우드칩을 전용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선박) ⁽¹⁵⁻²⁾ - 시멘트전용운반선(시멘트를 전용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선박) ⁽¹⁵⁻³⁾ - 가축운반선(가축을 운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선박) ⁽¹⁵⁻⁴⁾ - 갑판화물선(갑판 상부에만 화물을 적재하도록 설계된 선박) ⁽¹⁵⁻⁵⁾ - 상갑판까지 화물창의 전 높이 및 화물지역의 전 길이에 걸쳐 연장된 이중선체를 가지는 이중선체구조의 일반건화물선 ⁽¹⁵⁻⁶⁾ ⁽¹⁵⁻⁷⁾ : 규칙 7편 6장 18절 에 규정된 IBC Code의 적용을 받지 않는 Category OS로 분류된 액체화물만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에 부기한다. ⁽¹⁵⁻⁸⁾ : <u>본선에 셀가이드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적용지침 7편 부록 7-2에 따라 승인된 컨테이너 고박설비 및 적재방법에 의해 컨테이너를 전반적으로 적재하는 선박에 부기한다. (예, 다목적선(Multi-Purpose Ship))</u>
9. ~ 10. <생략>	<생략>	<생략>
11. Container Ship ⁽²⁰⁾	LS ⁽²⁰⁻¹⁾ LS(CL) ⁽²⁰⁻²⁾ LS(CL, RS) ⁽²⁰⁻³⁾ LS(CL, RS+)⁽²⁰⁻⁴⁾	⁽²⁰⁾ : Container만을 전용으로 운송하도록 계획된 선박에 부기한다. ⁽²⁰⁻¹⁾ : 지침 7편 부록 7-2 에 따라 설계 및 제작된 컨테이너 고박설비가 설치된 선박에 부기한다. ⁽²⁰⁻²⁾ : 상기 ⁽²⁰⁻¹⁾ 에 추가하여, 지침 7편 부록 7-2 에 따라 우리 선급에 의하여 승인된 고박강도계산프로그램이 설치 및 유지되는 선박에 부기한다. ⁽²⁰⁻³⁾ : 상기 ⁽²⁰⁻²⁾ 에 추가하여, 지침 7편 부록 7-2 에 따라 화물고박지침서에 우리 선급에서 제공한 항로별 경감계수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설치된 고박강도계산프로그램에 항로별 경감계수가 반영된 선박에 부기한다. ⁽²⁰⁻⁴⁾ : <u>상기 ⁽²⁰⁻²⁾에 추가하여, 지침 7편 부록 7-2에 따라 화물고박지침서에 우리 선급에서 제공한 임의의 항로에 대한 경감계수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임의의 항로에 대한 경감계수를 산출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고박강도계산프로그램이 설치된 선박에 부기한다.</u>

개정 사항

12. ~ 14. <생략>

선종	특기사항		비고
15-1. Tug Boat (2018)	A (용도)	B (노출갑판 상에 요구되는 방폭)	- : Tug 또는 Pusher 전용의 경우 별도 기재 불요 (24) : 다음에 따른다. 1) GA : 타선소화설비와 관련하여 노출갑판 상에 요구되는 방폭요건을 만족하는 선박에 부기한다. 2) GC : 타선소화설비와 관련하여 노출갑판 상에 방폭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선박에 부기한다.
- Salvage Supply Anchor Oil Recovery(GA, GB 또는 GC) ⁽²⁵⁾	GA 또는 GC ⁽²⁴⁾		
15-2 Pusher (2018)	- (Type A) (Type B) Pusher/Tug (Type A) (Type B)		Type A : permanent connection 형식 Type B : removable connection 형식
16. Work Vessel	- Launch Cable Layer Crane Anchor Ice Breaker Supply Oil Recovery(GA, GB 또는 GC) ⁽²⁵⁾ Salvage Repair Work Tender <새롭게 추가>		- : Work 전용인 경우에는 기재불요 (25) : 다음에 따른다. 1) GA : 누출유를 수거, 저장하고 누출유 처리작업 구역, 저장구역 및 노출갑판 상에 요구되는 방폭요건을 만족하는 선박에 부기한다. 2) GB : 누출유를 수거, 저장하고 누출유 처리작업 구역 및 저장구역에 요구되는 방폭요건을 만족하는 선박에 부기한다. 3) GC : 누출유를 수거, 저장하고 방폭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선박에 부기한다.

<이하 생략>

개정 사항

12. ~ 14. <현행과 동일>

선종	특기사항		비고
15-1. Tug Boat (2019)	<u>A*</u> (용도)	B (노출감판 상에 요구되는 방폭)	<u>A*</u> : 특기사항, A(용도),와 관련하여, Offshore Support Vessel(OSV)의 특기사항 부호 <u>인 FFS1, FFS2, FFS3 또는 FF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OSV의 특기사항 부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19)</u> - : Tug 또는 Pusher 전용의 경우 별도 기재 불요 (24) : 다음에 따른다. 1) GA : 타선소화설비와 관련하여 노출감판 상에 요구되는 방폭요건을 만족하는 선박에 부기한다. 2) GC : 타선소화설비와 관련하여 노출감판 상에 방폭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선박에 부기한다. Type A : permanent connection 형식 Type B : removable connection 형식
	- Salvage Supply Anchor Oil Recovery(GA, GB 또는 GC) ⁽²⁵⁾	GA 또는 GC ⁽²⁴⁾	
15-2 Pusher (2018)	- (Type A) (Type B) Pusher/Tug (Type A) (Type B)		
16. Work Vessel	- Launch Cable Layer Crane Anchor Ice Breaker Supply Oil Recovery(GA, GB 또는 GC) ⁽²⁵⁾ Salvage Repair Work Tender Dredging (2019)		- : Work 전용인 경우에는 기재불요 (25) : 다음에 따른다. 1) GA : 누출유를 수거, 저장하고 누출유 처리작업 구역, 저장구역 및 노출감판 상에 요구되는 방폭요건을 만족하는 선박에 부기한다. 2) GB : 누출유를 수거, 저장하고 누출유 처리작업 구역 및 저장구역에 요구되는 방폭요건을 만족하는 선박에 부기한다. 3) GC : 누출유를 수거, 저장하고 방폭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선박에 부기한다.

<이하 현행과 동일>

연 행

선종	특기사항	비고
17. Special Purpose Ship	<p>〈새롭게 추가〉</p> <p>Soil Geological Survey Boat Submersible Support Diving Support Hopper/Waste Waste(폐기물 운반선) Hospital(병원선) Hydro Survey(수로측량선) Seismic Survey(해저탐사선) Fire-Fighting(소방선)(GA 또는 GC)⁽²⁴⁾ Buoy Laying(항로표지선) Fishery Training(어업 실습선) Fishery Patrol(어업 감시·지도선) Fishery Research(어업 조사선) Patrol(감시·지도선) Pilot(Pilot선) Observation(해양조사선) Training(연습선) Research(해양조사선)</p>	

개 정 사 항

선종	특기사항	비고
17. Special Purpose Ship	<p><u>- (2019)</u></p> <p>Soil Geological Survey Boat Submersible Support Diving Support Hopper/Waste Waste(폐기물 운반선) Hospital(병원선) Hydro Survey(수로측량선) Seismic Survey(해저탐사선) Fire-Fighting(소방선)(GA 또는 GC)⁽²⁴⁾ Buoy Laying(항로표지선) Fishery Training(어업 실습선) Fishery Patrol(어업 감시·지도선) Fishery Research(어업 조사선) Patrol(감시·지도선) Pilot(Pilot선) Observation(해양조사선) Training(연습선) Research(해양조사선)</p>	

현 행

선종	특기사항		비고
	A(형태)	B(적재 화물명 및 부가사용목적)	
18. Barge (FAC) ⁽¹⁾ (FAO) ⁽¹⁾ (FBC) ⁽¹⁾	- Pontoon Integrated Pusher Barge (Type A) (Type B) Hopper (또는 Dump)	Chemical ⁽²⁶⁾ Oil Container Sand Crane Pipe-Laying Piling Cable-Laying Salvage Submersible Accommodation Waste Log Heavy Cargo Oil Recovery(GA, GB 또는 GC) ⁽²⁵⁾ <새롭게 추가>	- : 3가지 형태이외의 부선 즉 갑판에 창구를 갖고 화물창에 화물을 적재하는 부선으로서 기재불요 (26) : 선종 중 3란 Chemical Tanker의 특기사항 및 2.2의 기재요령 참조 Type A : permanent connection 형식 Type B : removable connection 형식
16. Work Vessel		<생략>	<생략>

<이하 생략>

개 정 사 항

선종	특기사항		비고
	A(형태)	B(적재 화물명 및 부가사용목적)	
18. Barge (FAC) ⁽¹⁾ (FAO) ⁽¹⁾ (FBC) ⁽¹⁾	- Pontoon Integrated Pusher Barge (Type A) (Type B) Hopper (또는 Dump)	Chemical ⁽²⁶⁾ Oil Container Sand Crane Pipe-Laying Piling Cable-Laying Salvage Submersible Accommodation Waste Log Heavy Cargo Oil Recovery(GA, GB 또는 GC) ⁽²⁵⁾ Power Plant (2019) Wind Turbine Transportation (2019)	- : 3가지 형태이외의 부선 즉 갑판에 창구를 갖고 화물창에 화물을 적재하는 부선으로서 기재불요 (26) : 선종 중 3란 Chemical Tanker의 특기사항 및 2.2의 기재요령 참조 Type A : permanent connection 형식 Type B : removable connection 형식
16. Work Vessel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이하 현행과 동일>

현 행

(비고) ⁽³⁵⁾ : 다음의 추가특기사항은 해당 규정에 적합한 경우 부기한다.
 추가특기사항은 선체사항인지 기관사항인지에 관계없이 선체부호 아래 특기사항 다음의 위치에 부기한다.

추가특기사항	적용규정
SeaTrust (DAS1, DAS2, FSA1, FSA2, FSA3, HCM) (2017)	지침 3편 부록 3-2부터 3-4에서 규정 하는 선박의 구조강도평가, 피로강도평가 또는 선체건조감시에 대한 지침에 따라 건조된 선박. 다만, (CSR) 부호를 갖는 선박에 대하여는 SeaTrust (DAS1, DAS2, FSA1, FSA2, FSA3)을 부기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규칙 13편)에 따라 건조되는 선박에는 선체건조감시 부기부호 SeaTrust(HCM)을 강제로 부기한다.
SeaTrust (SPR1, SPR2) (2018)	스프링잉을 고려한 피로강도 평가 지침서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피로강도 평가 기준에 적합한 선박
WHIP (2017)	휘핑을 고려한 컨테이너선의 강도평가 지침에서 규정하는 강도평가 기준에 적합한 선박
〈이하 생략〉	
CSMS1, CSMS2, CSMS3, CSMS1(C), CSMS2(C), CSMS3(C) (2018)	해상 사이버보안 관리 시스템 지침에서 규정하는 해상 사이버보안 관리 시스템을 갖춘 선박
〈새롭게 추가〉	〈새롭게 추가〉

개 정 사 항

(비고) ⁽³⁵⁾ : 다음의 추가특기사항은 해당 규정에 적합한 경우 부기한다.
 추가특기사항은 선체사항인지 기관사항인지에 관계없이 선체부호 아래 특기사항 다음의 위치에 부기한다.

추가특기사항	적용규정
SeaTrust (DAS1, DAS2, FSA1, FSA2, FSA3, HCM, SPR1, SPR2, WHIP) (2019)	지침 3편 부록 3-2부터 3-4에서 규정 하는 선박의 구조강도평가, 피로강도평가 또는 선체건조감시에 대한 지침에 따라 건조된 선박. 다만, (CSR) 부호를 갖는 선박에 대하여는 SeaTrust (DAS1, DAS2, FSA1, FSA2, FSA3)을 부기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규칙 13편)에 따라 건조되는 선박에는 선체건조감시 부기부호 SeaTrust (HCM)을 강제로 부기한다.
WHIP (2017)	스프링잉을 고려한 피로강도 평가 지침서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피로강도 평가 기준에 적합한 선박
WHIP (2017)	휘핑을 고려한 컨테이너선의 강도평가 지침에서 규정하는 강도평가 기준에 적합한 선박
〈이하 현행과 동일〉	
CSMS1, CSMS2, CSMS3, CSMS1(C), CSMS2(C), CSMS3(C) (2018)	해상 사이버보안 관리 시스템 지침에서 규정하는 해상 사이버보안 관리 시스템을 갖춘 선박
CSAP (2019)	지침 7편 부록 7-11에서 규정하는 갑판 상 컨테이너 고박을 위한 안전한 작업조건 제공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는 선박

현 행

1.2 추가설비부호

다음의 추가설비부호는 해당 규정에 적합한 경우 부기할 수 있다.

추가설비부호	적용규정	
선체사항	〈생략〉	
	〈신설〉	
기관사항	〈생략〉	
	<u>Battery (2018)</u>	선박용 대용량 배터리시스템 지침에서 규정하는 50 kWh 이상의 용량을 가진 대용량 배터리시스템을 설치한 선박
	LNG Bunker (2018)	〈생략〉
	VRS (2018)	〈생략〉
		〈신설〉

개 정 사 항

1.2 추가설비부호

다음의 추가설비부호는 해당 규정에 적합한 경우 부기할 수 있다.

추가설비부호	적용규정	
선체사항	〈현행과 동일〉	
	<u>ADUW (2019)</u>	지침 4편 부록 4-3의 심해 및 비보호수역에서 규정하는 묘박설비를 설치한 선박
기관사항	〈현행과 동일〉	
	<u>Battery-M, Battery-A (2019)</u>	선박용 대용량 배터리시스템 지침에서 규정하는 50 kWh 이상의 용량을 가진 대용량 배터리시스템을 설치한 선박
	LNG Bunker (2018)	〈현행과 동일〉
	VRS (2018)	〈현행과 동일〉
	<u>FTS (2019)</u>	지침 5편 6장 부록 5-13의 요건에 따라 연료유처리시스템을 설치한 선박

현 행

부록 1-5 선체구조부재의 두께계측 방법

표 3-2 두께계측 시 계측위치 및 계측점의 수 - CSR 선박 (계속)

항목	계측위치 및 계측점의 수	그림 참조
단일선체 산적화물선: 화물창 내 선측늑골	선측늑골, 상하부 단부브래킷 및 인접한 선측외판을 포함 늑골 25%: 각 현에서 화물창 길 이에 걸쳐 4개 중 1개의 늑골 늑골 50%: 각 현에서 화물창 길 이에 걸쳐 2개 중 1개의 늑골 “선택된 늑골”이라 함은 화물창 각 현에서 적어도 3개의 늑골	지역의 범위는 지침 <u>부록 1-6의 1항</u> <u>(2)호 또는 (6)호</u> 계측점의 위치는 그림 3
이중선체 산적화물선: 이중선측탱크 내 횡늑골		그림 1
(비고) 1. ○ 표시는 계측위치를 나타낸다. 2. ×, √ 표시는 계측점을 나타낸다.		

개 정 사 항

부록 1-5 선체구조부재의 두께계측 방법

표 3-2 두께계측 시 계측위치 및 계측점의 수 - CSR 선박 (계속)

항목	계측위치 및 계측점의 수	그림 참조
단일선체 산적화물선: 화물창 내 선측늑골	선측늑골, 상하부 단부브래킷 및 인접한 선측외판을 포함 늑골 25%: 각 현에서 화물창 길 이에 걸쳐 4개 중 1개의 늑골 늑골 50%: 각 현에서 화물창 길 이에 걸쳐 2개 중 1개의 늑골 “선택된 늑골”이라 함은 화물창 각 현에서 적어도 3개의 늑골	지역의 범위는 지침 부록 1-6의 1항 (2)호 또는 (6)호 <u>(2019)</u> 계측점의 위치는 그림 3
이중선체 산적화물선: 이중선측탱크 내 횡늑골		지역의 범위는 지침 부록 1-6의 1항 (6)호 <u>(2019)</u> 계측점의 위치는 그림 1 3 <u>(2019)</u>
(비고) 1. ○ 표시는 계측위치를 나타낸다. 2. ×, √ 표시는 계측점을 나타낸다.		

현 행

표 4 정기검사 시의 두께계측 - 일반선박 (계속)

정기검사	계측범위 및 위치
제4차 및 이후	〈생략〉
<p>(비고)</p>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5px;">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width: 20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cccccc; margin-right: 5px;"></div> : 갑판의 계측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width: 20px; height: 10px; background: repeating-linear-gradient(45deg, transparent, transparent 2px, #cccccc 2px, #cccccc 4px); margin-right: 5px;"></div> : 선측외판의 계측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width: 20px; height: 10px; background: repeating-linear-gradient(-45deg, transparent, transparent 2px, #cccccc 2px, #cccccc 4px); margin-right: 5px;"></div> : 횡단면 계측(판에 대해서만 계측)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width: 20px; height: 10px; background: repeating-linear-gradient(0deg, transparent, transparent 2px, #cccccc 2px, #cccccc 4px); margin-right: 5px;"></div> : 횡단면 계측(중통부재 포함, 횡식 늑골구조의 선박인 경우 인접한 늑골 및 그 단부 브래킷을 포함) </div>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표의 적용상 일반선박이라 함은 규칙 표 1.2.4의 2.의 기타선박을 제외한 선박을 말한다. 2) 두께계측 위치는 화물 및 평형수 사용기록과 보호도장 상태를 고려하여 가장 부식이 심하다고 간주되는 대표적인 부위를 선정한다. 3) 내부 구조부재의 두께계측은 경화보호도장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4) 길이 100 m를 넘는 선박인 경우 제3차 정기검사에서 중앙부 0.5 L 이내 노출갑판의 두께계측을 요구할 수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p>	

개정 사항

표 4 정기검사 시의 두께계측 - 일반선박 (계속)

정기검사	계측범위 및 위치
제4차 및 이후	〈현행과 동일〉
<p>(비고)</p>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5px;">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width: 20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cccccc; margin-right: 5px;"></div> : 갑판의 계측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width: 20px; height: 10px; background: repeating-linear-gradient(45deg, transparent, transparent 2px, #cccccc 2px, #cccccc 4px); margin-right: 5px;"></div> : 선측외판의 계측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width: 20px; height: 10px; background: repeating-linear-gradient(-45deg, transparent, transparent 2px, #cccccc 2px, #cccccc 4px); margin-right: 5px;"></div> : 횡단면 계측(판에 대해서만 계측)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width: 20px; height: 10px; background: repeating-linear-gradient(0deg, transparent, transparent 2px, #cccccc 2px, #cccccc 4px); margin-right: 5px;"></div> : 횡단면 계측(중통부재 포함, 횡식 늑골구조의 선박인 경우 인접한 늑골 및 그 단부 브래킷을 포함) </div>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표의 적용상 일반선박이라 함은 규칙 표 1.2.4의 2.의 기타선박을 제외한 선박을 말한다. 2) 두께계측 위치는 화물 및 평형수 사용기록과 보호도장 상태를 고려하여 가장 부식이 심하다고 간주되는 대표적인 부위를 선정한다. 3) 내부 구조부재의 <u>두께계측의 범위는</u> 은 경화보호도장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할 수 있다. <i>(2019)</i> 4) 길이 100 m를 넘는 선박인 경우 제3차 정기검사에서 중앙부 0.5 L 이내 노출갑판의 두께계측을 요구할 수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현행과 동일〉</p>	

현 행

개 정 사 항

표 7 정기검사 시의 두께계측 - 액화가스 산적운반선 (계속)

정기검사	계측범위 및 위치
제3차	〈생략〉
제4차 및 이후	〈생략〉

표 7 정기검사 시의 두께계측 - 액화가스 산적운반선 (계속)

정기검사	계측범위 및 위치
제3차	〈현행과 동일〉
제4차 및 이후	〈현행과 동일〉

표 7 정기검사 시의 두께계측 - 액화가스 산적운반선 (계속)

(비고)

- : 갑판의 계측
- : 선측외판의 계측
- : 횡단면 계측(판에 대해서만 계측)
- : 횡단면 계측(중통부재 포함, 횡식 늑골구조의 선박인 경우 인접한 늑골 및 그 단부 브래킷을 포함)

- 1) ~ 2) 〈생략〉
- 2) 중앙횡단면이 일반적인 화물선과 유사하고 독립형탱크 형식C를 갖는 선박인 경우 검사원의 판단에 따라 탱크정판을 포함하는 것 까지 두께계측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3) 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구역 내의 지역인 경우 우리 선급은 두께계측의 범위를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 4) 〈생략〉

표 7 정기검사 시의 두께계측 - 액화가스 산적운반선 (계속)

(비고)

- : 갑판의 계측
- : 선측외판의 계측
- : 횡단면 계측(판에 대해서만 계측)
- : 횡단면 계측(중통부재 포함, 횡식 늑골구조의 선박인 경우 인접한 늑골 및 그 단부 브래킷을 포함)

- 1) ~ 2) 〈현행과 동일〉
- 2) 중앙횡단면이 일반적인 화물선과 유사하고 독립형탱크 형식C를 갖는 선박인 경우 검사원의 판단에 따라 탱크정판을 포함하는 것 까지 두께계측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3) 경화보호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구역 내의 지역인 경우 우리 선급은 두께계측의 범위를 특별히 고려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할 수 있다. (2019)
- 4) 〈현행과 동일〉

현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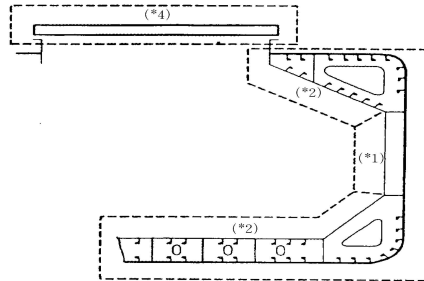
부록 1-6 정밀검사 대상부위

1.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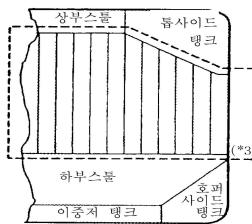
(1) <생략>

(2) ESP 부호를 갖는 산적화물선의 정밀검사 대상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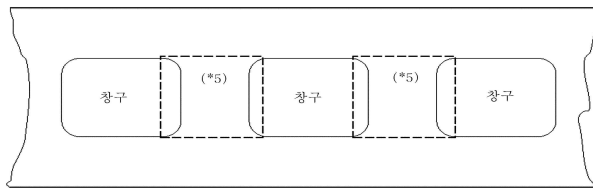
(횡단면 형상)



(화물장, 횡격벽 형상)



(화물창구 축선내에 있는 갑판의 판)



정밀검사 부위

<이하 그림 : 생략>

비고 (*1)부터 (*5)는 규칙 표 1.3.13 참조.

<이하 생략>

개정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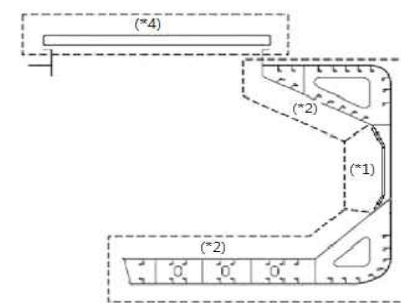
부록 1-6 정밀검사 대상부위

1. <현행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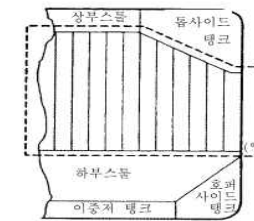
(1) <현행과 동일>

(2) ESP 부호를 갖는 산적화물선의 정밀검사 대상부위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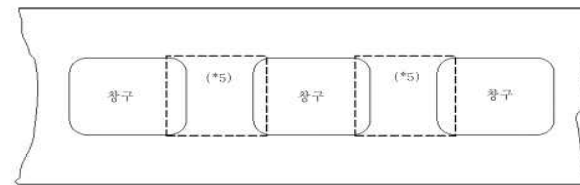
(횡단면 형상)



(화물장, 횡격벽 형상)



(화물창구 축선내에 있는 갑판의 판)



정밀검사 부위

<이하 그림 : 생략>

비고 (*1)부터 (*5)는 규칙 표 1.3.13 참조.

<이하 현행과 동일>

현 행

부록 1-12 제조중등등록검사 시의 선체검사

표 1 선체검사항목활동 표									
참조	건조기능	선급 검사요건	선급 검사방법	IACS 문서*	정부대행요 건 및 관련 문서	건조 중 검사원이 사용가능하여야 하는 문서	선박건조철을 위한 문서	특정활동	이 신조업무를 위한 선급의 제안
7	PSPC에 따른 도장시스템을 제외한 부식방지조치, 예를 들면, 도장, 음극방식, 외부전원식	선체외부를 형성하는 평형수탱크의 경계 및 산적화물선 화물창내부표 면, 창구덮개 및 코밍에는 유효한 보호도장이 되어야 한다. 음극방식장치 의 안전성은 별도로 취급되어야 한다.	조선소 및 제조자의 문서에 대한 검토 및 보고	UR Z8 및 Z9, U1 SC122, UR F1	Reg. 11-1/3-2 of SOLAS as amended	제조사 및 조선소의 사양	부식방지사양서	적용된 도장이 승인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및 시공기록에 대한 검토	
								적절한 기록이 유지되었으며 선박건조철에 사본이 보관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방오시스템의 적용		검토		AFS 협약	도장사양서	도장사양서 및 제조사 선언서	적절한 기록이 유지되었으며 선박건조철에 사본이 보관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7.1	PSPC 적용대상인 모든 형식의 선박의 전용 평형수탱크 및 산적화물선의 이중선측 공간에 대한 보호도장	도장검사요건 의 이행을 감시	파트를 및 검토	U1 SC223	Reg. 11-1/3-2 of SOLAS as amended	서명되고 검증된 삼자합의서	도장기술파일	적용된 도장이 승인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및 MSC.215(82) 부록 7장을 적용한 기록에 대한 검토	

개 정 사 항

부록 1-12 제조중등등록검사 시의 선체검사

표 1 선체검사항목활동 표									
참조	건조기능	선급 검사요건	선급 검사방법	IACS 문서*	정부대행요 건 및 관련 문서	건조 중 검사원이 사용가능하여야 하는 문서	선박건조철을 위한 문서	특정활동	이 신조업무를 위한 선급의 제안
7 (2019)	PSPC에 따른 도장시스템을 제외한 <u>부식보호시스 템</u> , 예를 들면, 도장, 음극방식, 외부전원식	선체외부를 형성하는 평형수탱크의 경계 및 산적화물선 화물창내부표 면, 창구덮개 및 코밍에는 유효한 보호도장이 되어야 한다. 음극방식장치 의 안전성은 별도로 취급되어야 한다.	조선소 및 제조사 의 문서에 대한 검토 및 보고	UR Z8 및 Z9, U1 SC122, UR F1	Reg. 11-1/3-2 of SOLAS as amended	제조사 및 조선소의 사양	부식방지사양서	적용된 도장이 승인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및 시공기록에 대한 검토	
								적절한 기록이 유지되었으며 선박건조철에 사본이 보관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방오시스템의 적용		검토		AFS 협약	도장사양서	도장사양서 및 제조사 선언서	적절한 기록이 유지되었으며 선박건조철에 사본이 보관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7.1	PSPC 적용대상인 모든 형식의 선박의 전용 평형수탱크 및 산적화물선의 이중선측 공간에 대한 <u>경화보호도장</u>	도장검사요건 의 이행을 감시	파트를 및 검토	U1 SC223	Reg. 11-1/3-2 of SOLAS as amended	서명되고 검증된 삼자합의서	도장기술파일	적용된 도장이 승인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및 MSC.215(82) 부록 7장을 적용한 기록에 대한 검토	